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분석

김재호, 김화일, 김경순, 이나은
장성은, 강대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분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진

연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재호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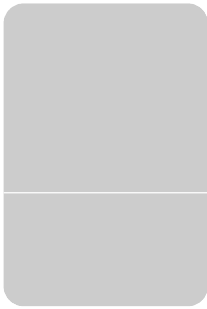
연구원 : 김화일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연구원 : 김경순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연구원 : 이나은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연구보조원 : 장성은 (석사과정, 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연구보조원 : 강대민 (학사과정,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요약문

- 연구기간 2024년 04월 ~ 2024년 10월
- 핵심 단어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 대행 서비스, 안전보건 시장
- 연구과제명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분석

1. 연구배경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감축을 위하여 산업현장 일선에서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대행제도는 민간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들의 과당 경쟁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 육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관리의 개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한적 권한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산업재해예방 활동 주체로 참여시키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등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 전반과 관련 제도 및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

2. 주요 연구내용

1)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법령, 제도 등 문헌조사 분석 연구

국내외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기관의 역할과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제고 방안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 설문조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일반 운영 현황과 위탁대행 서비스 사업의 산재 예방 기여도, 현 운영상 애로사항, 시장 확대를 위한 필요, 요구사항,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심층인터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역량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분야별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정부기관 담당자, 서비스 수요사업장 안전담당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대행 서비스 등 산재 감소 및 예방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 조사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포함 한 산재예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 조사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 조사

4)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산재예방 대행위탁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요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행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와 민간재해예방 위탁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와 대행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 요구 사항,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인식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실태 및 역량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조사’와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적정성과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위탁대행서비스의 효과성 및 역량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의 결과로 얻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 중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행 및 실현 가능한 안에 대해서는 AHP분석을 실시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과 관련제도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작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방안 마련
- 현장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본 연구의 결과물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활용한다며 양질의 노동력 보존을 위한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근로 활동을 조성하게 됨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증가, 재해율 감소, 생산성 증대 및 예방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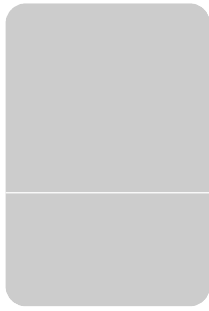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교수 김재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차장 정호석
 - ☎ 052) 703. 0844
 - E-mail hs.jung@kosha.or.kr



목 차

I. 서론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목표	11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II. 문헌연구결과	31
1.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선행연구 등 분석 및 문헌고찰	31
2. 국외 산업안전보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운영 현황	58
3. 국외 민간재해예방기관 우수사례	91
4. 소결	98
III. 설문조사 연구결과	105



목 차

1.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현황 설문조사	105
2.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심층인터뷰	126
3.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148
4.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02
IV. 결론	221
참고문헌	227
부록 : 설문조사지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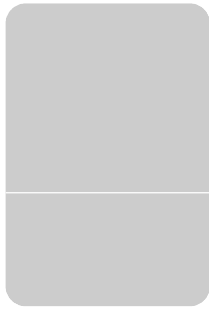


표 목차

〈표 Ⅰ-1〉 민간재해예방기관 2023년 평가 결과	9
〈표 Ⅰ-2〉 민간재해예방기관 유형별 문헌조사 및 제도 분석의 연구내용, 연구범 위 및 활용	14
〈표 Ⅰ-3〉 민간재해예방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 조사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15
〈표 Ⅰ-4〉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 서비스 만족도 등 조사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16
〈표 Ⅰ-5〉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제언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17
〈표 Ⅰ-6〉 조사기관 및 데이터베이스	19
〈표 Ⅰ-7〉 국가별 비영리기관 주요 사업 비교(예시)	21
〈표 Ⅰ-8〉 실태조사 문항제작을 위한 선행연구	23
〈표 Ⅰ-9〉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25
〈표 Ⅱ-1〉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제도	32
〈표 Ⅱ-2〉 각 국의 기능구조별 기관 현황	60
〈표 Ⅱ-3〉 해외 민간컨설팅 주요사업	60
〈표 Ⅱ-4〉 NSC 주요사업	64
〈표 Ⅱ-5〉 ASSP 주요사업	67
〈표 Ⅱ-6〉 BCSP 주요사업	70
〈표 Ⅱ-7〉 PSM과 RBPS 항목 비교	73
〈표 Ⅱ-8〉 IOSH 인증 종류 및 요건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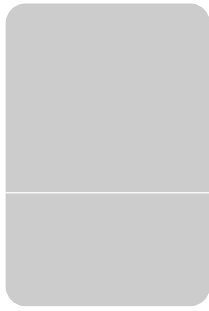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I-9〉 BSC 사업 종류 및 내용	80
〈표 II-10〉 BCSP 인증 자격증 취득 조건	94
〈표 II-11〉 국가별 정부기관 역할 비교	98
〈표 II-12〉 국가별 정부 산하기관 역할 비교	99
〈표 II-13〉 각 국의 민간기관의 주요사업 비교	100
〈표 III-1〉 설문문항 내용	106
〈표 III-2〉 설문조사 개요	107
〈표 III-3〉 민간재해예방기관 설문 대상	108
〈표 III-4〉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균 전문인력 보유율	114
〈표 III-5〉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원사업장 수	117
〈표 III-6〉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등 관련자 대상 심층인터뷰 목록	126
〈표 III-7〉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등 관련자 대상 심층인터뷰 일정	129
〈표 III-8〉 심층인터뷰 면담조사 참여자	131
〈표 III-9〉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의견	132
〈표 III-10〉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의견	137
〈표 III-11〉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141
〈표 III-12〉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143
〈표 III-13〉 만족도조사 설문 분석 응답자 비율	149
〈표 III-14〉 실태조사 설문 문항 내용	150
〈표 III-15〉 실태조사 설문 개요	152
〈표 III-16〉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설문 대상	166

〈표 Ⅲ-17〉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업종	167
〈표 Ⅲ-18〉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지역	167
〈표 Ⅲ-19〉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규모	168
〈표 Ⅲ-20〉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공사 규모	169
〈표 Ⅲ-21〉 응답자 직책	169
〈표 Ⅲ-22〉 안전담당자 응답자 직책	170
〈표 Ⅲ-23〉 사업장 연간 매출액	171
〈표 Ⅲ-24〉 사업장 안전보건 예산 편성 여부	171
〈표 Ⅲ-25〉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 처리 절차	172
〈표 Ⅲ-26〉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분야	174
〈표 Ⅲ-27〉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자문을 얻는 기관	176
〈표 Ⅲ-28〉 업무 위탁 후 사고 및 질병 발생 등의 변화	178
〈표 Ⅲ-29〉 업무 위탁 제도의 필요성 인식	179
〈표 Ⅲ-30〉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대행 제도가 필요한 이유	181
〈표 Ⅲ-31〉 위탁·대행 서비스 활용 계기	183
〈표 Ⅲ-32〉 위탁·대행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인식도	185
〈표 Ⅲ-33〉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질	187
〈표 Ⅲ-34〉 안전보건교육 서비스 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187
〈표 Ⅲ-35〉 안전보건교육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	188
〈표 Ⅲ-36〉 안전보건교육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에 대한 의견	189
〈표 Ⅲ-37〉 정기점검 및 방문 이외 업무 요청 시 처리 방식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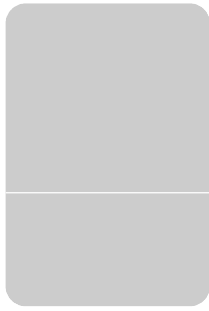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II-38〉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장 처리 방식	191
〈표 III-39〉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안전점검 지도사항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193
〈표 III-40〉 위탁서비스 담당자 사업장 방문 시 업무 수행 시간	194
〈표 III-41〉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안전점검 지도사항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195
〈표 III-42〉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추가 필요 서비스	197
〈표 III-4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서비스 지원 의향	199
〈표 III-44〉 상위 기준 및 하위 기준	206
〈표 III-45〉 AHP 쌍대비교 평가 기준	208
〈표 III-46〉 상위 기준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10
〈표 III-47〉 하위 기준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11
〈표 III-48〉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1)	212
〈표 III-49〉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2)	213
〈표 III-50〉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3)	214
〈표 III-51〉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4)	215
〈표 III-52〉 기준의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217



그

[그림 Ⅰ-1] 산업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2015~2022년)	4
[그림 Ⅰ-2]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5
[그림 Ⅰ-3] 연구의 단계별 내용	13
[그림 Ⅰ-4] 문헌고찰 절차	20
[그림 Ⅰ-5] 설문조사연구 절차	22
[그림 Ⅱ-1] 민간재해기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우선방향	50
[그림 Ⅱ-2] 산업재해 예방 5개년계획의 5대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정책과제	52
[그림 Ⅱ-3] 효율적 산재예방 집행체계 정립을 위한 4대 중점 실행 방안	53
[그림 Ⅱ-4]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형태별 사고재해율 현황(기술통계)	56
[그림 Ⅱ-5] BCSP 인증 챔피언 프로그램	93
[그림 Ⅲ-1] 설문응답 기관의 수행 중 사업분야	111
[그림 Ⅲ-2] 설문응답 응답자 직위	112
[그림 Ⅲ-3] 응답자 근무기간	113
[그림 Ⅲ-4] 민간재해예방 상시근로자(기업규모)	115
[그림 Ⅲ-5] 민간재해예방 안전보건 전문인력 비율	115
[그림 Ⅲ-6] 전문인력 1인당 사업장수 및 사업장 당 연간 평균 수수료	117
[그림 Ⅲ-7]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도(종합)	118
[그림 Ⅲ-8]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도(각분야)	119



그

[그림 Ⅲ-9]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이유	120
[그림 Ⅲ-10]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이유	121
[그림 Ⅲ-11]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22
[그림 Ⅲ-12] 재해예방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54
[그림 Ⅲ-13] 보건관리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55
[그림 Ⅲ-14] 안전보건진단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56
[그림 Ⅲ-15] 안전인증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57
[그림 Ⅲ-16] 자율안전검사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59
[그림 Ⅲ-17] 직무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61
[그림 Ⅲ-18]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62
[그림 Ⅲ-19]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63
[그림 Ⅲ-2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64
[그림 Ⅲ-21] 쌍대비교 평가 비교	209

I . 서 론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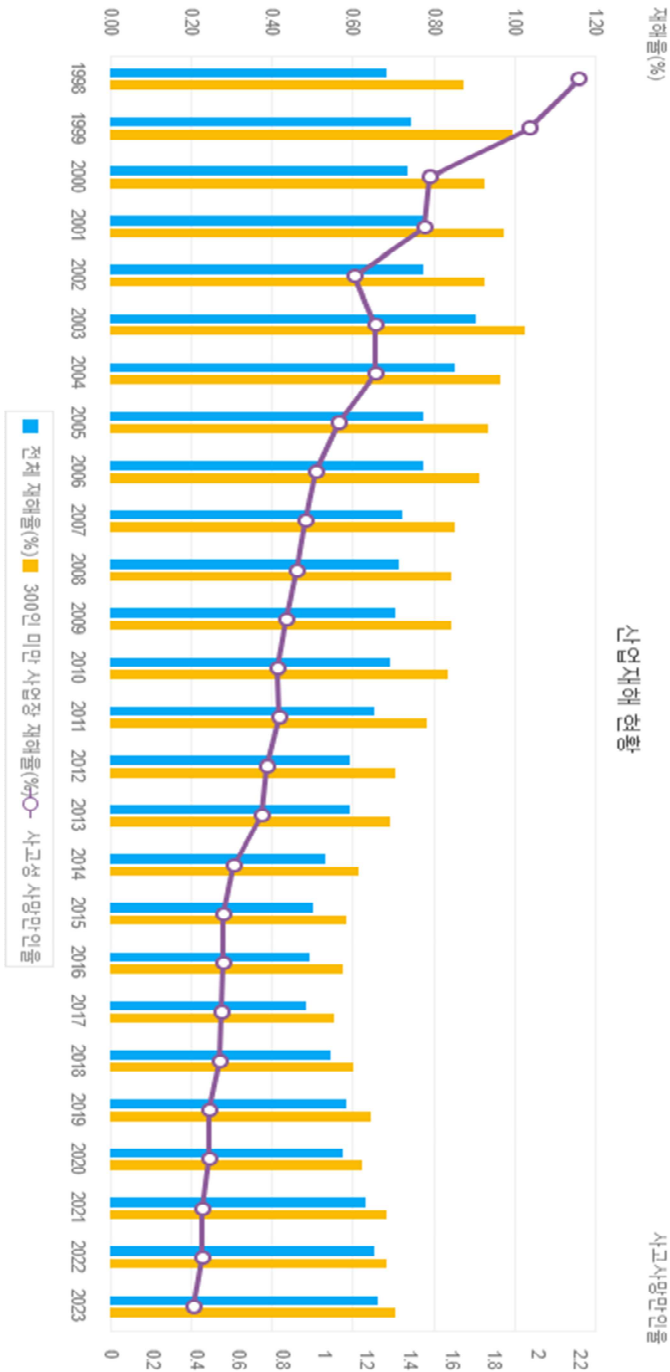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난 25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0.68%에서 2003년 0.9%, 이후로 2017년까지 0.48%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3년 0.66%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7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4년 3월 말 기준 전체 산업재해율은 0.16%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I-1).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3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7%로 2013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I-1).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은 지난 25년 동안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0.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그림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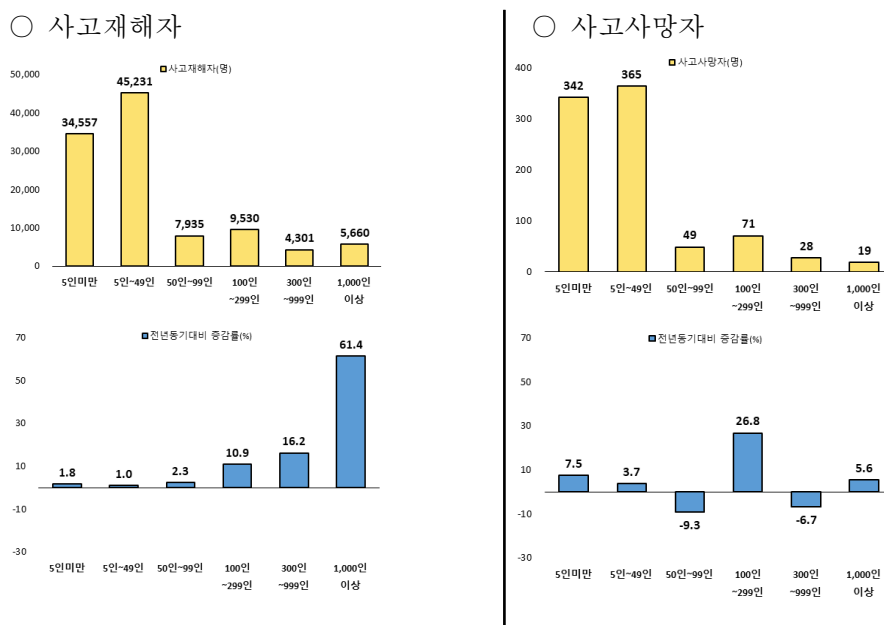


[그림 I -1] 산업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2015~2022년)

2)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고재해자는 전체 사업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은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61.4% 증가하였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재해자수는 79,788명으로 전체 사고재해자 중 74.42%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I-2).

사고사망자는 ‘100인~299인’ 사업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26.8%), ‘50인~99인’ (-9.3%), ‘300인~999인 (-6.7%)’ 사업장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 874명 중 707명이 사망하여 80.89%의 비중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사고사망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2).



[그림 I-2]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3)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운영 현황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안전교육, 안전시설 감사, 안전 규정 준수 지도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1986년 7월 1일 안전·보건 관리를 민간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대행제도를 시행하면서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한축으로 등장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등록 제도로써 정하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교육 대행, 건설재해예방지도,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석면조사,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검사 등 총13개 유형의 기관이 약 1,341개소가 활동 중이다.

2024년 현재 파악되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154개소), 보건관리전문기관(124개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27개소), 특수건강진단기관(234개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71개소), 석면조사기관(203개소), 안전인증기관(4개소), 안전검사기관(3개소), 자율안전검사기관(23개소), 안전보건진단기관(48개소),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155개소), 직무교육기관(26개소),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69개소) 등(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중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직접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3개 유형(안전관리,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지도)에서 약 350여 개소로 확인 된다. 이 중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은 2019년의 경우 전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인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중 79.6%에 달하며(고용노동부, 2019), 이 기관들이 대행하는 사업장은 약 29,997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대행제도는 민간 재해예방기관들의 과당 경쟁과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위탁의 대가를 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장 점검 후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되지 않고 대행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정작 사업장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 육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관리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 충족여부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해예방기관 등 민간기관을 산업재해예방 활동 주체로 참여시키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4)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산재예방 대형 수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평가하며, 운영체계, 위탁사업장의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는 S등급 126개소(9.4%), A등급 392개소(29.2%), B등급 425개소(31.7%), C등급 229개소(17.1%), D등급 140개소(10.4%), 기타 29개소(2.2%)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가 결과 대비 우수등급(S·A) 기관의 경우 3.5%p 감소하였으나, 하위등급(C·D) 기관은 2.8%p 증가하였다 (표 I-1).

기존기관 대비 신규기관의 하위등급 비율이 높게 평가되어 신규기관에 대한 관련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 등 전문성 제고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1〉 민간재해예방기관 2023년 평가 결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S등급 (매우우수)	A등급 (우수)	B등급 (보통)	C등급 (미흡)	D등급 (불량)	기타	
계	1,341	128	390	425	229	140	29	
①	안전관리 전문기관	154	10	28	60	40	6	10
②	보건관리 전문기관	124	2	46	60	10	6	0
③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227	22	65	71	34	35	0
④-1	특수건강 진단기관	234	42	90	72	25	5	0
④-2	야간특수건강 진단기관	71	5	20	18	17	8	3
⑤	석면조사 기관	203	7	47	70	50	28	1
⑥	안전인증 기관	4	1	3	0	0	0	0
⑦	안전검사 기관	3	0	1	2	0	0	0
⑧	자율안전검사 기관	23	1	0	12	4	2	4
⑨	안전보건진단 기관	48	0	5	9	11	16	7
⑩	근로자안전보건 교육기관	155	27	47	27	25	29	0
⑪	직무교육 기관	26	0	9	10	4	3	0
⑫	건설업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69	11	29	14	9	2	4

5)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필요성

-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량 향상 필요
- ▶ 이를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 필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감축을 위하여 산업현장 일선에서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50인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 주요 수요처이긴 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장의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등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규모, 인력, 매출, 사업현황 등의 일반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등에 대한 시장 수요 분석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방안의 제시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 전반과 관련 제도 및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

2. 연구목표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향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 전반과 관련 제도 및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일반 현황, 역할과 활동,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제고 방안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새롭게 열리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에서 주도 및 견인 가능한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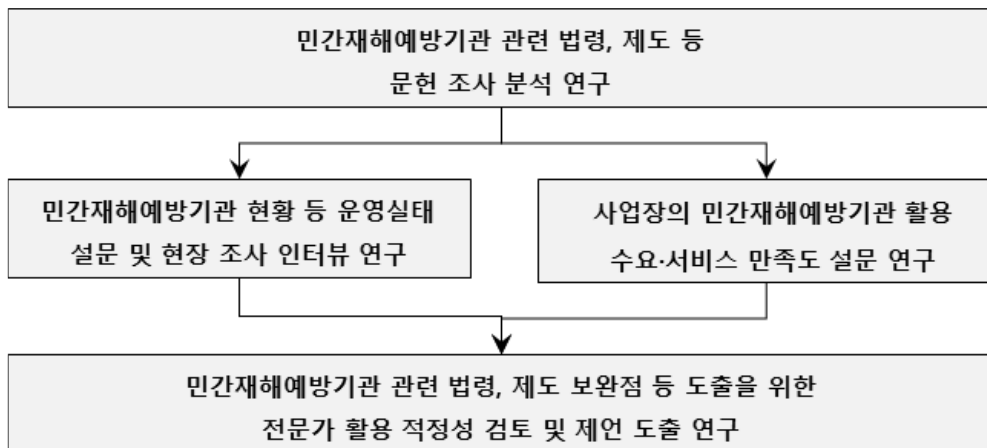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야간 포함), 안전보건진단기관(명령 및 자율 포함), 안전보건 지정교육기관, 지정 인증·검사기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무교육기관 등 13개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법령, 제도 등 문헌 조사 분석연구와 현재 운영중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현황 등 운영실태 조사 및 현행 산업재해예방 위탁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향후 시장 수용 조사 연구, 산업재해예방 위탁 대행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서비스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제고 및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도출 등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3).

-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법령, 제도 등 문헌조사 분석 연구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유형별 규모, 인력, 매출 등 기관 현황 조사 및 분석
- 사업장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현황 분석
- 조사·분석결과 기반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그림 I-3] 연구의 단계별 내용

(2) 연구의 범위

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문헌조사

- 국·내외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제도를 조사
- 국외 민간재해예방기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제도 및 역할 등 조사, 정리
-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조사 및 고찰
-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안전선진국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우수 활동 사례 등을 조사

〈표 I -2〉 민간재해예방기관 유형별 문헌조사 및 제도 분석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연구 내용	연구범위	활용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문헌조사 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법령 조사 •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KOSHA Guide 등 업무상 예규 등 조사 • 2000년 이후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제도 분석 •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조사 • 전문가 협의체 활용 자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련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업무 정립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도출 • 민간재해예방기관 유형별 역할 규명 및 정부 등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 정립 • 안전보건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위탁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도출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유형별 규모, 인력, 매출 등 기관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관 현황 및 변화 추이 자료 조사
- 13개 유형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규모 및 인력, 보유 시설 등 기관 현황 설문 조사 분석 연구
-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수급 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및 위탁 대행요원 대상 현장 인터뷰 조사 분석 연구
-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전문가 집단 FGI (Focus Group Interview) 수행 및 분석 연구
-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필요사항, 향후 사업계획 방향 제안 등의 의견을 본 연구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AHP 분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임

〈표 I -3〉 민간재해예방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 조사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연구내용	연구범위	활용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관 현황 및 변화 추이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해예방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실시 • 지난 5년간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 결과 추이 분석 	민간재해예방기관 현황 정립 및 추이 변화 도출을 통한 관련 제도의 정책 반영 사항 도출 및 제안
13개 유형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규모 및 인력, 보유 시설 등 기관 현황 설문 조사 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한 기관 현황 조사 및 설문조사 (10곳)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기관 운영 우수 사례 발굴 및 취약점 도출을 통한 관련 제도 보완 사항 등 도출

다) 사업장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현황 분석

- 국내 사업장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본 연구결과로 반영함
- 안전보건 등 대행 서비스 수요 기업 대상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서비스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및 분석

〈표 I -4〉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 서비스 만족도 등 조사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연구내용	연구범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장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피검 기관을 통한 안전보건 등 대행 서비스 수급 업체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및 안전보건 관련 전문 역량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완 사항 도출 및 제도적 보완 사항 제안점 도출

라) 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이나 전문가회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검증

〈표 I-5〉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제언의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활용

연구내용	연구범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성 검토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회의 또는 공청회를 통한 현장 작동성 측면의 검증 • 전문가회의 또는 공청회를 통한 기술적 측면의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보 • 보도자료에 대한 근거로 활용

2) 연구방법

(1) 민간재해예방기관 유형별 역할 및 제도 분석

문헌조사 연구는 국·내외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기관의 역할과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조사 및 고찰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규명하고 정부 등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도출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안전선진국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우수 활동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한다.

가) 조사기관 및 데이터베이스 선정

〈표 I -6〉 조사기관 및 데이터베이스

조사범위	분류	조사기관
기관	국내	법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국외	미 국: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유 럽: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데이터 베이스	국내	구글 학술, KISS, RISS, 국회도서관, DBpia
	국외	Google Scholar, PubMed, Science Direct, Medline, Scopus, Web of Science, JSTOR

나) 국내·외 문헌고찰을 위한 키워드 선정

국내: 민간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안전진단, 안전관리대행서비스, 보건관리대행서비스, 위험기계기구검사, 작업환경측정, PSM 컨설팅,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 안전보건컨설팅,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문화.

국외: management safety and health NGO,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 private institution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business, etc.

다) 국내·외 문헌고찰 절차

- 1 step: 기관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2 step: 키워드 검색
- 3 step: 제목 리뷰
- 4 step: 초록 및 개요 리뷰
- 5 step: 문서 전체 리뷰
- 6 step: 조사 항목 및 관련 내용 정리



[그림 I-4] 문헌고찰 절차

라) 문헌조사 내용 정리 방법

국·내외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하여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기관의 역할과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표 I-7〉 국가별 비영리기관 주요 사업 비교 (예시)

국가	기관	주요 역할
미국	미국안전협회 (N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교육, 컨설팅 및 연구사업
	안전기술자 협회 (AS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전문가를 위한 전문개발프로그램 운영 • 대략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기준 수립 및 인정사업 • 안전보건 관련 포상 및 출판사업 • 안전보건 연구 • 대학교 장학금 지급 및 연구자원 지원
영국	안전보건협회 (IO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사업 • 정부기관 기술자문 • 안전보건전문가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사업
	NEBO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시험 및 평가 • 교육과정 개발 및 민간 기관에 교육과정 위탁
	ROS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가정, 도로교통, 학교, 레저분야 등 안전자문, 자원 및 교육 제공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Audit) 서비스 • 공인 안전보건 자격 교육과정 제공 등
독일	재해보험조합 (B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 보상, 재활지원 업무 • 위험설비 검사 및 보호구 성능검정 • 안전보건 기술지도 감독 (주정부와 별도 시행) •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 사업장의 중대 위반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분야별 기술위원회에서 재해예방규정 및 시행지침 제정
	TÜ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위탁 시험 검사업무 수행
한국	대한산업안전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행 및 진단사업 운영 • 사업장 안전기술 서비스 제공 • 안전인 육성을 위한 KISA 장학금 운영
	대한산업보건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생사업, 건강진단사업, 보건관리사업 운영 • 학술조사연구사업과 산업보건연구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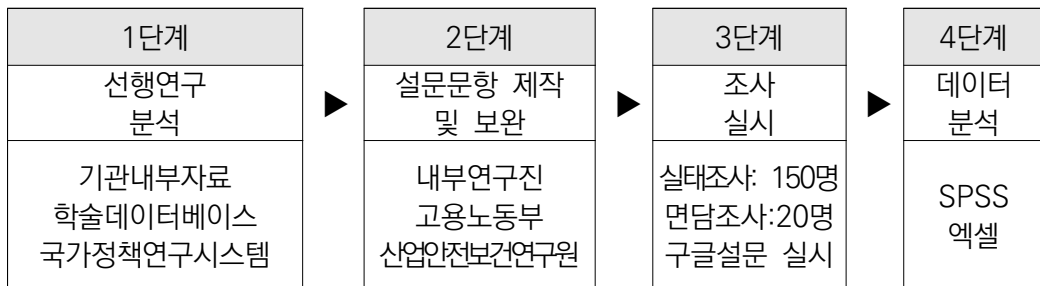
2)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관 현황 및 변화 추이 자료 조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일반 운영 현황과 위탁대행 서비스 사업이 산재예방 기여도, 현 운영상 애로사항, 시장확대를 위한 필요, 요구사항,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실태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 요구사항,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자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문제점 확인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도출한 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1) 설문조사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총 4단계로 수행한 설문조사 연구의 과정은 그림 I-5와 같다.



[그림 I-5] 설문조사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학술콘텐츠 플랫폼 (DBpia)를 활용하여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 민간재해예방 시장 활성화 방안,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민간단체 역할 제고 방안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표 I-8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설문조사 문항제작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I-8〉 실태조사 문항제작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자료

연구자 (연도)	연구명	주요 내용	연구 기관
백종배 (2011)	민간기관의 사고예방 사업 활성화 방안	민간기관에 대한 평가와 민간기관이 역량/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역량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즉 “산업안전보건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충주 대학교
이진국 외 (2022)	사업장 점검·감독 연계 강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지정,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대행 및 위탁기관인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 감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
이명구 외 (2014)	산재예방정책 의 중장기 전략 모색	정부 산재예방정책의 성과분석과 산재예방활동의 실태분석, 선진외국 산재예방정책의 벤치마킹,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현행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

김현주 (2019)	산재예방정책 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선진국의 산재예방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별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포럼 운영 (13회)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산재예방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
조용원 (2023)	안전보건산업 육성 전략 연구	우리나라 산업체계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안전보건 여건의 변화,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건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수행을 통한 안전보건 정책 수단의 효율성을 제고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
이경용 외 (2012)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국가 경제발전단계 및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별 중장기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산업재해 통계시스템 구축,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신설 및 확대,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국내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함	산업안전 보건 연구원

(2)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심층인터뷰

산업안전보건법상 활동 위탁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현황 조사를 위하여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대상 1,341개 업체 각 13개 사업분야 별 중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중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며, 각 단체별 지정 사업 분야를 정리하고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현황 및 역량제고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 항목을 기본으로 설문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로는 수집하기에 제한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표 I -9〉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구분	심층인터뷰 대상	주요 사항
민간재해 예방기관 현장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운영 현황 • 민간재해예방기관 산재예방 기여정도 • 역할 관련 장애요인 • 민간단체 역할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의견 수렴 • 추후 사업 확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기관 • 건강진단기관 (특검 및 야간특검 포함) • 안전인증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포함) • 안전진단기관 (명령 및 자율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교육기관 	

3)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사업장에 대한 대행업무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등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대행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한다.

국내 사업장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각계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One-page 설문조사를 수행하며(100곳 이상), 산업재해예방활동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실에서 2023년 조사했던 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예방활동 대행 서비스 이용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받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서비스 요구 사항 등을 질문하는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One-page 설문조사는 Google 설문지를 활용한다.

4)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이상)

자문회의 시에는 개선안을 도출하여 전문가(정부, 공단, 학계, 사업장 관계자 등) 의견수렴 예정임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로 총 3명 내외의 자문단 구성

-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분야별 전문가, 관련 연구 등 수행 경력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성과평가관련 전문가 등

연구결과 및 정책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 실시(2회 실시)

-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토
-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대행 관계법령 및 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 국외 관계법령 및 정책의 국내 도입 시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 관계법령 및 정책 개선 방안 검토 및 도출 등



Ⅱ. 문헌연구결과



II. 문헌연구결과

1.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선행연구 등 분석 및 문헌고찰

1)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법령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 업무 등 13개 유형의 업무에 대한 점검 및 지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13개의 유형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이 있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8」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매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석면조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제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1〉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제도

지정제도 근거법령	개요
제17조(안전관리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정제도 근거법령	개요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p>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제88조(안전인증기관)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제96조(안전검사기관)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p>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p>
제125조(작업환경측정)	<p>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p>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1)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법령

가) 고용노동부 예규(제2022-200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7의 제2호 가목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 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 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3. 영 별표 7의 제1호 또는 별표 8의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위생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공정별 설비·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위험성 추정 및 평가, 개선계획, 담당확인 등)가 받드

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건강증진, 위생보호구,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등을 말한다)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관리·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와 분리하여 기록·보존할 수 있다.
-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제1~2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2. 건강진단·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3.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마)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1~2항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바)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3항 (석면조사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1~2항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아)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자)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차)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제고 등 관련 선행연구

(1)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 (목연수 외, 2004)

우리나라 산업체계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안전보건 여건의 변화,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건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수행을 통한 안전보건 정책 수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안전보건 수준의 선진화 목표를 달성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세부사항 규제 위주의 안전보건 관리 방식으로부터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사후적 책임을 확실히 묻는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해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노사 주도에 의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하고, 또한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유인시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건설 현장 등 재해빈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평가 의무화 확대 시행을 제안하였다.

안전보건 서비스 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 감축을 위해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2) 민간기관의 사고예방사업 활성화 방안 (백종배, 2011)

안전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연구범위로 하여 산업재해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 현황과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와 민간기관이 역량/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즉 “산업안전보건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정부의 안전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둘째, 안전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셋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화 (수수료 지정분야)

항 목	선호 응답 순위별 점수			개선 방향 선호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우선 순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16	9	3	69	1
산업안전보건 민간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10	6	10	52	2
산업안전보건 민간기관 중 유사분야의 통합	0	3	2	11	7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의 민간기관 사업활동 참여	0	3	3	12	6
검사기관과 유지보수기관의 독립성 확보(지정검사기관)	0	0	0	0	9
정부의 민간기관 평가를 통한 차등관리(관리감독 강화)	0	1	1	3	8
안전보건 민간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한 사업확대 유도	1	0	0	3	8
지정제도 폐지를 통한 민간기관 간 자율경쟁 유도	0	0	0	0	9
정부 감독관의 안전보건 관리감독능력 강화	1	8	8	24	4
민간기관 사업수수료 산정기준의 현실화(수수료 지정분야)	6	9	6	42	3
부당한 무료서비스 근절을 위한 수수료 확보방안 마련 (수수료 미지정 분야)	5	0	3	18	5
기타 (지정기관을 제한하여 사업성 확보 및 수수료 현실화)	1	0	0	3	8

[그림 II-1] 민간재해기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우선방향

(3)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이경용 외, 2012)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다발하고 각종 신종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한계가 드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1990년), 직업병예방 종합대책(1991년),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1994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1996년),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1차 1999년, 2차 2004년, 3차 2009년)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업재해 예방제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행정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 경제발전단계 및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별 중장기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산업재해 통계시스템 구축,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 신설 및 확대,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국내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1.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안전·보건지원 〈2〉 사망재해 다발요인 특별관리 〈3〉 산재취약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
2.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사업장내 서비스 위주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5〉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3.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는 평생 안전교육체제 구축 〈7〉 법 준수 풍토 구현
4. 공공-민간기관간 합리적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공공-민간 부문간 고유기능 중심의 역할 재설정 〈9〉 안전·보건행정 지도·감독 기능 강화 〈10〉 재해예방기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체제 확립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안전·보건법령상의 중복규제 해소 〈12〉 노·사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그림 II-2] 산업재해 예방 5개년계획의 5대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 정책과제

(4)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모색 (이명구 외, 2014)

정부 산재예방정책의 성과분석과 산재예방활동의 실태분석, 선진 외국 산재예방정책의 벤치마킹,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현행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였다.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제로서 사업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리더십 강화,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유도,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 활용, 근로감독관 감독체계의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수준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방법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지도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사업규모의 확대 및 수수료 단가의 상향 등을 통하여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I-3] 효율적 산재예방 집행체계 정립을 위한 4대 중점 실행 방안

(5)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김현주 외, 2019)

주요 선진국의 산재예방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포럼 운영 (13회)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산재예방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산재예방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선 즉, 외주화에 따른 위험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 확대 및 지원 체계 마련, 건설업 및 하청업체 보유 4대 주요 업종의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산업보건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현행 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우수기관과 불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재의 제도적 장치 미흡을 지적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리시스템 운영에서는 기술지도 결과의 부정확 입력 사례가 많아 직접기술지도 기관(안전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의 기술지원의 충실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안하였으며, 민간 재해예방 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도 관련 관리제도 및 교육의 질 개선을 도출하였다.

매해 약 36만개 사업장에 대한 민간위탁 안전보건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서비스 위탁수수료가 민간시장가격의 60% 정도로 낮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사업 참여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안전보건 컨설팅 기관의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며, 유형별 민간기관의 필요성 등 근본적 시각에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6)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실태에 관한 연구 (송석진, 2020)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러 유형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사업장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검증하였다.

‘2019년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등 7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최종 10,482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①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②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③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 ④ 수도권과 영남권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①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 ②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 ③수도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이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대행제도의 현행 유지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산재사고사망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규모별	안전관리자	평균	표준편차	N
300인 이상	자체	.1466	.23415	576
	대행	.1168	.28013	250
	합계	.1375	.24917	826
300인 미만	자체	.2842	1.18048	1632
	대행	.3899	1.30095	8024
	합계	.3720	1.28194	9656
합계	자체	.2483	1.02361	2208
	대행	.3816	1.28291	8274
	합계	.3535	1.23399	10482

[그림 II -4]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별 사고재해율 현황(기술통계)

(7) 사업장 점검·감독 연계 강화 방안 (이진국 외, 2022)

산업재해를 예방 차원의 점검과 감독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감독의 영역에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각 주체의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지청,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대행 및 위탁기관인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 감독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산재감소를 위해 사업장의 사전적 점검, 지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예방감독 투입,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 건설분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무자 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절차가 없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에도 절차가 있지만 연계 정도는 보통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교류하고 주체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의 부재와 점검 주체마다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업무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되어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점검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 사업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미개선 사업장에게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처벌감독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도출해내어, 이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2. 국외 산업안전보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운영 현황

국외 중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운영현황과 역할을 검토 분석하였다. 각 기관들의 역할과 사업종류 등은 연구 문헌과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은 우리나라 운영 형태와는 다르게 민간재해예방을 위한 위탁과 관련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에 따른 엄격한 처벌제도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자율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컨설팅 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의 지원을 받거나 자주적으로 산업재해 방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민간 컨설팅기관의 주요 수입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비롯해 안전감사 (Safety Audit), 위험성평가 등에 관련된 서비스와 공정안전진단과 소방관리 안전분야의 서비스가 있으며 직업성질환, 직무스트레스 진단 등 보건분야의 주요사업이 있다.

특히, 해외 민간컨설팅 기관의 독특한 사업이 있는데, 안전보건 전문가 증언서비스 (Expert Witness Service)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안전보건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한 후, 특정상황에 대한 법규 적용성 등을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 등이 있다.

먼저 정부기관을 살펴보면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독일은 연방 노동사회성(BMA), 우리나라는 노동부에서 산업재해예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미국안전보건협회(NIOSH), 영국 안전보건연구원(HSL),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다.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는 국가별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2는 미국, 영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부기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표 II-3은 해외 민간단체의 영리기관의 주요 컨설팅 사업의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2〉 각 국의 기능구조별 기관 현황

기능 구조	미 국	영국	독 일	한 국
정부 기관	산업안전보건청 (OSHA)	보건안전청 (HSE)	연방노동사회성 (BMA)	고용노동부
정부 산하 기관	미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 (NIOSH)	안전보건연구원 (HSL)	연방산업안전 보건연구원 (BAUA)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KOSHA)
민간 단체	미국안전협회 (NSC) 미국안전기술협회 (ASSE) 컨설팅 및 교육기관	왕립재해방지협회 (RoSPA) 산업안전보건협회 (IoSH) 산업안전보건자격 시험원 (NEBOSH) 영국안전협의회 (BSC) 컨설팅 및 교육기관	재해보험조합 (BG) 독일기술감독협회 (TÜV) 컨설팅 및 교육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민간재해예방기관 (13개분야)

〈표 II-3〉 해외 민간컨설팅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공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안전보건 전문가증언서비스
안전	안전감사 및 위험성 평가 서비스 공정안전 진단 및 소방관리 서비스
보건	직업성질환자 등 보건관리, 직무스트레스 진단서비스 건강진단 및 산업위생 서비스
기타	공인교육과정 서비스 전문서적 출판 환경컨설팅 서비스

1) 미국

미국의 정부기관은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SHA)이며, 노동부 산하의 외청으로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의 집행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역할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제정 및 관리감독을 통한 법규 준수를 감독 관리 등이 있다.

OSHA의 산업재해 예방 전략은 공정한 법 집행(fair enforcement),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훈련(proactive education), 규정준수 지원(compliance assistance), 소규모영세사업장 관리(targeted outreach to small businesses), 효과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프로그램(effective partnership and cooperative programs)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사고사망만인율을 큰 폭으로 줄이는 등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산하기관으로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등이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 밑으로 민간단체(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1) 정부기관

가) OSHA(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미국의 근로자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1970년 설립었다. OSHA는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을 제정·집행하고 사업장의 업무 관련 재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 표준 시행, 법규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나) NIOS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는 업무 관련 재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에 따라 설립된 NIOSH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OSHA는 노동부에 소속되어 직업안전보건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갖는 반면에 NIOSH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NIOSH는 주로 역학, 약학, 산업위생, 안전, 심리학, 공학, 화학, 통계학 분야의 전문가 등 총 1,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핵심 책무로서 산재 취약계층과 광업/농업/건설/의료 등 고위험분야의 상해 및 질병감소를 위한 집중연구프로그램 수행, 주요 작업장 질병 및 상해를 비롯한 안전보건 잠재위험에 대한 감시(surveillance), 작업장 평가를 통한 개선 개입 또는 개선 권고를 통해 예방활동증대, 작업자와 사업주를 비롯한 대중 및 산업안전보건 단체(Community)에 정보와 교육을 제공, 타 기관 및 민간조직에 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OSHA는 작업장 안전 표준 및 규정을 시행하여 NIOSH 연구를 기반으로 OSHA의 표준 및 규정을 제정한다.

주요 교육훈련 사업으로는 작업장 상해 및 질병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 산업위생/산업간호/산업의학/산업안전 등 학위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가능성 연구, 전문가를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최적의 방법과 매체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세부 사항(components)을 조사 및 평가하고 있다.

(2) 민간기관

가) 비영리기관

- NSC(National Safety Council, 미국 국가안전위원회)

NSC는 1913년 설립되어 1953년 연방의회에서 법인단체로 승인되었으며, 산업 안전·도로교통 및 가정 안전 분야에 관한 연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

2003부터 OSHA와 협력관계를 맺어 안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력을 하고 있으며, NSC 주요 사업으로는 표 II-4와 같이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사업 등이 있다.

〈표 II-4〉 NSC 주요사업

사업종류	명칭	내용
자격증 프로그램	위험관리 인증서	위험 평가 및 관리의 기본을 배우고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와 전략을 탐구하고자 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OSH) 전문가를 준비
	안전관리 인증서	안전 관리에 대한 인정된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프로세스를 배우고자 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OSH) 전문가를 위해 설계
	안전관리 리더십 자격증	안전 관리 리더십 인증서는 안전 관리 인증서의 확장으로, 최신 안전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 전략을 사용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인증서	효과적인 OHS 관리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배우고 ANSI/ASSP Z10 또는 ISO 45001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며 감사 프로세스와 모범 사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개발하려는 산업 안전 보건(OSH) 전문가를 위해 설계

사업종류	명칭	내용
안전인증	인증 안전 전문가(ASP) (Associate Safety Professional)	초보 안전 전문가의 신임장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CS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첫 단계
	인증 안전 전문가(CSP)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인증 안전 전문가(CSP) 인증 시험 준비
	인증 시험을 위한 수학 리뷰 (Math Review for Certification Exams)	인증 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원리
	안전 관리 전문가(SMS) (Safety Management Specialist)	안전 관리 전문가 자격증은 대학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산업 안전 및 건강 경험을 가진 헌신적인 안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건설 건강 및 안전 기술자(CHST) (Construction Health and Safety Technician)	건설 산업에서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능력 습득
	산업 위생 및 안전 기술자(OHST)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Technician)	기술적인 산업 안전 보건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습득

- ASSP(American Society of Safety Professionals, 미국 안전전문가 협회)

ASSP은 1911년 설립된 산업안전보건전문가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2018년 미국 안전 엔지니어 협회에서(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 ASSE)에서 ASSP(American Society of Safety Professional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업무 관련 직업 안전 보건 문제를 관리, 감독, 연구 및 컨설팅하는 직업 안전 및 건강(OSH)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조직이다. 협회의 회원들은 미국표준협회(ANSI)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각종 표준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락·리스크관리·도로교통안전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미국 기술자문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평생교육협회(IACE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의 승인을 받아 안전보건 및 환경전문가를 위한 전문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SSP는 학부 및 대학원과정의 수준의 교육을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ASSP 산하 교육기준위원회에서 각 학위 과정에 중요한 교육과목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등 교육 관련 지원 사업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1년 글로벌 직업 안전 및 건강(OSH) 조직이 힘을 합쳐 안전·보건 지속 가능성 센터(Center for Safety and Health Sustainability)를 설립하였으며, ASSP 주요 사업으로는 표 II-5와 같이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사업, 표준 인증·개발 유지·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표 II-5〉 ASSP 주요사업

사업종류	명칭	내용
자격증 프로그램	위험관리 인증서	위험 평가, 관리의 기본을 배우고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평가하기 위한 산업 안전 보건(OSH) 전문가교육
	안전관리 인증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정된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프로세스를 배우고자 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OSH) 전문가를 위해 설계
	안전관리 리더십 자격증	안전 관리 리더십 인증서는 안전 관리 인증서의 확장으로, 최신 안전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 전략을 사용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교육
	산업안전보건경영 시스템(OHSMS) 인증서	효과적인 OHS 관리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배우고 ANSI/ASSP Z10 또는 ISO 45001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

사업종류	명칭	내용
안전인증을 위한 교육	인증 안전 전문가(ASP) (Associate Safety Professional)	초보 안전 전문가의 신임장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CS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첫 단계
	인증 안전 전문가(CSP)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인증 안전 전문가(CSP) 인증 시험 준비
	인증 시험을 위한 수학 리뷰 (Math Review for Certification Exams)	인증 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원리
	안전 관리 전문가(SMS) 교육 (Safety Management Specialist)	안전 관리 전문가 자격증은 대학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산업 안전 및 건강 경험을 가진 헌신적인 안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건설 건강 및 안전 기술자(CHST) (Construction Health and Safety Technician) 교육	건설 산업에서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능력 습득
	산업 위생 및 안전 기술자(OHST)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Technician) 교육	기술적인 산업 안전 보건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습득
표준 인증	ANSI/ASSP	

- BCSP(Board of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s, 인증 안전 전문가 위원회)

BCSP는 안전 전문가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안전 전문가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수여하며, 안전, 보건 및 환경(SH&E) 관리 분야의 전문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으로 1969년에 설립되었다.

BCSP는 안전, 보건 및 환경(SH&E)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엄격한 교육, 경험 및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가로 인증함으로써 안전 관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BCSP는 안전 전문가에게 그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공하여 검증된 전문가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직장, 지역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BCSP의 인증 프로그램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BCSP 주요사업

사업종류	명칭	내용
인증 프로그램	인증 안전 전문가(CSP)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인증 안전 전문가(CSP)는 안전 종사자에게 더 높은 인정과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자격증으로, 안전, 건강, 환경(SH&E) 자격증의 최고 기준을 충족하고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SH&E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함
	안전 관리 전문가(SMS) (Safety Management Specialist)	SMS는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기업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 기술을 갖춘 안전, 건강, 환경(SH&E) 전문가에게 인정을 제공
	인증 안전 전문가(ASP) (Associate Safety Professional)	안전, 보건 및 환경(SH&E) 기본 사항에 대한 입증된 지식을 가진 안전 실무자로 인정
	산업 위생 및 안전 기술자(OHST)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Technician)	산업 위생 지식과 기술을 기술자 수준에서 산업 위생 및 직업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 실무자
	건설 건강 및 안전 기술자(CHST) (Construction Health and Safety Technician)	건설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는 건강 및 안전 활동 수행에 대한 헌신과 역량을 인정
	안전 훈련 감독자(STS) Safety Trained Supervisor	조직의 모든 계층의 리더를 대상으로 함. STS를 취득하더라도 안전을 주요 업무로 삼지 않을 수 있음

사업종류	명칭	내용
인증 프로그램	건설 안전 훈련 감독자 (STSC) Safety Trained Supervisor Construction	건설 산업에서 STSC을 달성하면 안전 리더가 될 수 있음.
	인증 교육 트레이너(CIT) (Certified Instructional Trainer)	안전, 건강, 환경(SH&E) 교육을 개발, 설계, 제공하는 데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지정	졸업 안전 전문가(GSP) Graduate Safety Practitioner	대학 졸업생 안전 전문가(GSP)는 이를 지원하는 대학 졸업생의 경력을 가속화하여 전문적인 발전과 경력 향상
	전환 안전 실무자(TSP) Transitional Safety Practitioner	BCSP 자격 동등 프로그램(QEP) 표준을 충족하는 안전, 건강, 환경(SH&E) 분야의 커리큘럼 기반 자격증 또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자격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증

나) 영리기관

- ABS 컨설팅사

1971년에 설립되어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에 본사가 있으며 전 세계 90여개국에 약 200여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주요 컨설팅 분야로 위험관리, 공정안전, 해양 사업지원, 주문주 검사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설비검증, 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컨설팅사업, 신뢰성평가 등 수행하고 있다.

미국화학공학회 (AIC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내 분과인 화학공장안전센터 (CCPS: Center of Chemical Process Safety)의 전문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공정안전관리(PSM) 체계에 지속적 개선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틀을 보완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PSM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학공정안전센터의 전문기술위원회는 2005년부터 위험기반 공정안전 (RBPS : Risk-Based Process Safety)이라는 새로운 PSM 체계를 개발하여 반영하였다 (표 II-7).

〈표 II-7〉 PSM과 RBPS 항목 비교

PSM항목	Risk Based Process Safety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안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안전문화 • 규정준수 • 공정안전역량 • 근로자 참여 • 이해관계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안전정보 • 공정위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위험 및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지식 관리 • 잠재위험 확인 및 위험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절차서 • 고열작업허가 • 기계무결성 • 협력업체 • 교육훈련 • 변경관리 • 가동전 안전 점검 • 비상사태계획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절차서 • 안전작업 • 자산 무결성 및 신뢰성 • 협력업체 관리 • 교육 및 성과 관리 • 변경관리 • 운전준비 • 운전 • 비상사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 규정준수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 측정 및 지표 • 감사 • 경영진 검토 및 지속성 개선

- DSS(DuPont Sustainable Solutions, 듀퐁 지속가능 솔루션)

DuPont Sustainable Solutions는 산업 안전, 운영 효율성,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9년에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하였다.

여러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J. J. Keller & Associates, Inc.(J. J. 켈러 & 어소시에이츠, Inc.)

J. J. Keller & Associates, Inc. 는 미국의 안전 및 규제 준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리 기관으로, 1953년에 창립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규제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J. J. Keller & Associates는 운송, 환경 건강 및 안전, 인사 및 노동법, 위험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을 한다.

2) 영국

영국의 정부기관은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며,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HSWA)을 집행하는 독립된 정부기구로 1974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안전보건분야를 통합하여 1975년에 설립되었다.

정부산하기관으로는 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이 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 HSL 밑으로 민간단체(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을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정부기관

가) HSE(영국 보건안전청)

영국의 보건안전청(HSE)은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HSWA)을 집행하는 독립된 정부기구로 사업장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담당하는 영국의 주요 규제 기관이다.

1974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각 부처 안전보건 분야를 통합하여 1975년에 설립되었다.

2002년 7월부터는 직업 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에서 HSC와 HSE를 지원하고 있으며, HSC의 주요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역할하며, HSE는 이러한 HSC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4월 HSC와 통합하여 HSE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HSE 는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활동을 통

해 각분야별로 관계 정부기관, 사업주 및 근로자 단체, 교육 및 컨설팅기관들과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전문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SE는 교육, 홍보, 공동체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Scotland 지역의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POOSH Scotland(Professional Organizat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스코틀랜드지역 안전보건전문가협회)가 조직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 협의회는 산업심리학, 인간공학, 산업위생학, 산업의학, 산업안전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사업장 안전보건 실무자, 관련 정부기관, 경영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상호 지식 및 정보를 교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분야 실무자들을 위하여 자격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각종 표준을 수립하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 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활동 지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HSE는 산업안전 관련 관리 감독 역할 수행, 사업장에서의 작업 활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질병의 예방 활동 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HSL(영국 안전보건연구원)

영국 안전보건연구원(HSL)은 보건안전청(HSE)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5년 HSL로 공식 설립되었으며 2015년 HSE 과학부로 통합되어 운영 중이다.

HSL은 작업장 안전, 보건 및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는 HSE의 규제 활동을 뒷받침하며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증거로 제공된다.

또한 산업체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작업장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며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관이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장의 재해 및 사고를 조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민간기관

가) 비영리기관

- IOSH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및 종사자들간의 교류를 위해 사고예방왕립사회부 (RoSPA)에서 분리되어 1945년에 설립되어, 1981년 IOSH로 조직명을 변경하였다.

영국의 개별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대변하여 실행 규범이나 지침의 승인, 국내외 기준제정위원회 활동,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IOSH의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훈련, 회의, 세미나, 간행물 발간을 통한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유지·촉진, 회원에게 정보서비스, 월간지 (The Safety and Health Practitioner) 및 정기 간행물 제공,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 개발 프로그램」 실시, 스트레스, 휴먼에러, 육체노동의 위험관리, 소음, 전기위험 등에 중점을 둔 전문과정 운영 등이 있다.

또한 IOSH 자격 및 시험 규제 기관으로 인정받아 표 II-8과 같이 인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8〉 IOSH 인증 종류 및 요건

사업종류	명칭	교육 내용 및 자격 요건
인증 프로그램	IOSH 레벨 6 디플로마 (IOSH Level 6 Diplo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안전 및 건강(OSH)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관리하거나 고위 경영진의 일원이거나 고위 리더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에 적합 • 19세 이상이어야 함. • 3급 OSH 자격증 또는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OSH 경험이 있어야 함. • 영어 기준을 충족해야 함.
	IOSH 레벨 3 인증 (IOSH Level 3 Certific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신규 및 야심찬 직업 안전 및 건강(OSH) 전문가를 위함.

- BSC(British Safety Council, 영국 안전 협의회)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수준향상을 위해 195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써 영국 내 학위기준에 인정되는 안전보건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또한 표 II-9와 같이 사업장 안전보건감사(Auditing) 및 자문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련 교재 및 뉴스레터 등 발행하고, 그밖에 안전보건 관련 최신 사례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전시회, 컨퍼런스, 유공자 시상, 연찬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II-9〉 BSC 사업 종류 및 내용

사업종류	명칭	내용
교육	IOSH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SH 레벨 6 디플로마 (IOSH Level 6 Diploma) • IOSH 레벨 3 인증 (IOSH Level 3 Certificate) 교육
	NEBOSH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BOSH 화재 안전 인증 • NEBOSH 건설 건강 및 안전 관리 • NEBOSH 국제 직업 건강 및 안전 일반 자격증 • NEBOSH 국가 일반 인증서 • 산업안전보건관리전문가를 위한 국가 학위 교육
	IEMA 과정	IEMA 환경 관리 재단 인증서
	영국 안전 협의회 과정	석면 인식, 미끄러짐과 넘어짐 방지 등 교육

사업종류	명칭	내용
감사 (Audit)	ISO 감사 (ISO Audit)	국제 표준화 기구(ISO)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
	5성급 감사 (Five Star Audit)	가장 포괄적이고 정량화된 감사 프로세스, 최신 법률,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따라 건강 및 안전 성과를 벤치마킹
	화재안전감사 (Fire safety Audit)	도덕적, 법적, 재정적 관점에서 화재 안전 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사전감사서비스 (Pre-audit services)	사전 감사 컨설팅 서비스는 매우 경험이 풍부한 자문가가 특별히 설계하여 건강, 안전, 환경 관리 감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
	시스템 검토 (Systems review)	시스템 검토는 모든 조직에 맞게 조정
컨설팅	웰빙 컨설팅 (Wellbeing consultancy)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춰 제공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직장 웰빙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일반 및 특정 컨설팅 (General and specific consultancy services)	기업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춰 제공되며, 기존의 건강, 안전 및/또는 환경 관리 조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문화 변화 컨설팅 (Culture change consultancy)	Tribe Culture Change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긍정적인 건강 및 안전 문화를 개발, 유지 및/또는 향상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을 지원하는 행동 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나) 영리기관

▪ Tersus Consultancy

1985년 설립되어 석면, 건강 및 안전, 화재, 보건 등에 대한 4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교육 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Tersus Consultancy는 2012년 석면 통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UKAS* 공인 테스트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전략을 개발하였다.

※ UKAS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영국 인증 서비스) :

영국 정부가 인증, 테스트, 검사 및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인정한 유일한 국가 인증기관

건강 및 안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 검사를 제공하며, IOSH 승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에 맞춘 공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BSI Group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

BSI는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의 품질, 안전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으로, 1901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기관이다.

BSI는 영국 표준(BS)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ISO/IEC) 작성에 참여하며, 이러한 표준은 의료 및 건설 분야부터 정보 기술 및 환경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및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BSI의 Kite mark(카이트 마트)는 품질과 안전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우수성의 표시로 신뢰를 받고 있다. BSI는 표준 개발 이외에 심사·인증,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Peuinsula Business Service LTD (영국)

영국의 PLIMSOLL Report 상의 374개 안전보건컨설팅 기관 중 매출 규모가 가장 높은 것은 Peuinsula Business Service LTD로 연매출이 약 5,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 고용법, 세무업무와 산업안전보건분야 법규 준수 및 안전경영시스템,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정부기관은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이며, 정부산하기관으로는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BAUA)이 있다. 정부산하기관 밑으로 민간단체(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1) 정부기관

가) BMAS(독일 연방노동사회부)

BMAS는 노동, 사회 복지, 고용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1949년에 연방 노동부로 설립되었다.

BMAS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데 참여하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한 작업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관련법 제정 및 정책방향 설정에 업무의 중점을 두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 및 연구를 위하여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조합(BG)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및 기술감독관을 감독하고 있다.

나) BAUA(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BAUA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연방 기관으로 1972년 연방노동사회성(BMA)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6년 7월 BAU(연방산업안전연구원)와 BAuA(연방산업의학연구원)을 합병하여 BAUA가 되어 독일 내 산업안전보건 관련중앙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상태 및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평가, 화학물질 등록·평가·인가, 안전공학·인간공학·산업보건 지식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대책개발,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정신적 위험요소(스트레스) 파악·평가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작업설비·공정 등의 설계에 활용, 기계기구 및 건제품의 안전성 평가·인증안전보건 시험소 인정, 전자파로 인한 근로자의 영향 연구, 산재사고 발생 시 업종별·규모별로 모든 산재비용 관련 통계가 기재되는 소위 「사고예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사망 재해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부서에 과학적 기반의 조언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OSH) 정책에 관한 정보에 기여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규정에 따른 살생물제 및 화학물질 평가를 포함하여 화학물질법에 따른 조항 집행을 담당하며, 시장 감시를 지원하고 제품 안전 알람 및 리콜을 관리한다.

직업의학, 예방의료, 직업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산업보건 예방조치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다) 독일 산재보험조합(BG : Berufsgenossenschaft)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C말 비스마르크 황제는 종합적인 독일 사회 복지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노령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가 재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산재보험조합(BG)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건강보험, 연금과 산재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가 독일에서 성립되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의 3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업종별 조합으로 1884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주(50%)와 근로자(50%)에 의한 자치기구로서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 20,000여명 중 재해예방 업무 종사자는 4,365명(기술 감독관 2,048명, 기술지도 및 상담요원 424명, 산업보건의 및 과학기술 인력 270명, 행정요원 1,62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재해예방규정(UVV) 제·개정

- BG내의 32개 분야별 기술위원회에서는 재해예방규정 및 동 시행 지침을 제정하여 연방노동사회성(BMA)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가짐

○ 위험기계·기구·설비 검사

- BG는 28개소의 전문 검사소를 갖고 있으며, 주로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합격품에는 GS(Geprüfte

Sicherheit)마크를 부착함

-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감독
 - BG 기술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예방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사업장의 중대한 위반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 관할사업장수('99년 기준) : 290만 개소
 피보험자수('99년 기준) : 4,200만명
-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 BG는 30개소의 교육원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과정은 강의식이 아닌 세미나식으로 진행함 (교육비용은 일체 BG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 직업병 예방 및 연구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 재활업무

(1) 민간기관

가) 비영리기관

- DGUV(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독일 사회상해보험)

DGUV는 독일의 사회 재해 보험 기관으로, 산업 재해 예방, 재활 및 보상을 담당하며 독일의 법정 상해 보험 기관을 총괄하는 협회이다. DGUV 산업 및 공공 부분을 포함하여 직원, 어린이, 학생 및 기타 모든 그룹을 산업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근로감독관과 협력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회사 내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 하거나, 사업장 재해 및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조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DGUV는 장크트 아우구스틴(Sankt Augustin), 보훔(Bochum), 드레스덴(Dresden)에 3개의 연구소를 운영하여 직업적 노출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DGUV는 글로벌 안전 포럼에 참여하고 전 세계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장 안전 기준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 IFA(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독일 사회상해보험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독일 사회상해보험(IFA)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연구 및 테스트 기관으로 법정상해보험 제공업체인 독일사회상해보험(DGUV)의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해, 질병, 업무 관련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환경 요인, 인체공학, 사고 예방 및 제품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안전 관련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및 인증을 제공하여 국내 및 국제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하여 기업 및 조직에 전문 컨설팅 서비스 및 규정 준수, 위험 평가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유해물질, 직업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GESTIS(유해물질정보시스템)를 관리한다.

나) 영리기관

▪ TÜV Rheinland

TÜV Rheinland는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가 확립된 안전, 품질 및 성능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검사 및 인증을 전담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 기관으로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 품질,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험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운영상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DEKRA

DEKRA는 안전, 시험, 검사, 인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중 하나로 1925년에 설립되어 6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 산업 등 모든 영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 검사 인증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DEKRA는 산업 플랜트, 기계 및 장비를 검사하여 안전 표준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소비자 제품을 테스트하고 인증하여 안전하고 규제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기업이 운영 중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험 평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환경, 품질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3. 국외 민간재해예방기관 우수사례

1) 미국 NSC networks(Occupational Safety & Health Network, 산업안전보건네트워크, 비영리기관)

1913년 설립되었으며 1953년에 하원의원법 (Act of Congress)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로부터 기금지원을 받고 있다. 약 55,0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도로교통 및 가정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컨설팅 사업으로는 범규준수 감사, 안전관리진단, 종업원 인식조사, 비전수립·역할 및 책임 정립·성과측정방안 수립 등 안전보건 전략수립 서비스, 안전보건 데이터측정 및 분석, 안전보건비용 산정 등이 있다.

교육훈련 사업으로는 경영진 안전보건리더십 함양을 위한 세미나, 안전성과 측정지표 도출 및 운영방법 교육, 안전보건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방법 교육을 비롯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개발 서비스(Custom Training Development services)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 분야에서 유명한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Safety Research를 발견하고 있다.

NSC에 가입된 회원은 11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의 OSH 리더와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하여 분기별 회의에서 규제 기관 대표 및 안전 및 건강 전문가와 관점을 공유하며 네트워킹 기회를 얻으며, 국가 안전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제안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 미국 BCSP 인증 시험

BCSP는 안전 전문가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안전 전문가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 인증을 통해 안전 전문가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BCSP의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어 개인의 전문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 II-10과 같이 자격증 취득 조건도 있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가치가 부여된다.

그림 II-5와 같이 BCSP 인증 챔피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아 디지털 배지, 웹사이트 인식, 소셜 미디어 노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Certification Champions Program

All Levels Offerings

- Access to the Group Management program and workplace scholarships
- A Group Account Management Kit which includes articles, templates, and guides
- Digital Printable Certificate
- Name Exposure via Conference Displays
- A social post and access to the digital badge and certificate when reaching a new level

 <p>SAPPHIRE BCSP</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5 -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pphire Digital Badge • Recognition on BCSP Website 	 <p>RUBY BCSP</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25 - 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y Digital Badge • Recognition on BCSP Website • Recognition in BCSP eNewsletter
 <p>EMERALD BCSP</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50 - 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erald Logo Digital Badge Use • Recognition on BCSP Website • Annual Focused Social Post • 30 - 45 sec. Animated Company Profile Video 	 <p>DIAMOND BCSP</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ond Logo Digital Badge Use • Recognition on BCSP Website • Annual Focused Social Post • 1 - 2 min. On Site Company Profile Video • Special placement of company logo on BCSP home page

*Credentials needed

[그림 II-5] BCSP 인증 챔피언 프로그램

〈표 II-10〉 BCSP 인증 자격증 취득 조건

종류	취득조건
인증 안전 전문가(CSP) (Certified Safety Professional)	최소 학사 학위 취득 이상 안전이 최소 50%인 4년의 안전 경험이 있고, 예방적이고 전문적이며 폭넓고 심도 있는 안전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함.
안전 관리 전문가(SMS) (Safety Management Specialist)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안전 관련 프로그램, 프로세스, 절차 및 또는 인력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최소 35% 이상인 산업 보건 또는 안전 분야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때 취득
준회원 안전 전문가(ASP) (Associate Safety Professional)	어떤 분야에서든 최소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안전, 건강 또는 환경 분야 준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준학사 학위에는 안전, 보건 또는 환경 분야에서 최소 12학기 시간/18분기 시간의 학습을 포함하는 최소 4개 과목이 포함되어야 함. 안전이 최소 50%인 1년의 안전 경험이 있고, 안전 업무의 폭과 깊이가 있는 예방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이 있어야 함.
산업 위생 및 안전 기술자(OHST)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Technician)	산업 위생 또는 안전 분야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예정이며(최소 35% 이상) 산업 위생 또는 안전 분야에서 기술적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산업 위생 또는 안전 분야에서 3년의 경험이 있어야 함.
건설 건강 및 안전 기술자(CHST) (Construction Health and Safety Technician)	건설 안전 분야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근무(최소 35%)하며 안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기술적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 건설 안전, 건강 및 환경 분야에서 3년의 경험이 있어야 함

종류	취득조건
<p>안전 훈련 감독자(STS) (Safety Trained Supervisor)</p>	<p>30시간의 안전, 건강 및 환경 교육을 이수해야 함. 2년의 감독 경험 또는 4년의 산업 분야 근무 경험(자격을 얻으려면 근무 경험이 최소 파트타임[주당 18시간] 이어야 함) 또는 산업 안전, 위험 관리 또는 건설 관리 분야에서 준학사 학위 이상 또는 2년의 무역 또는 노동 조합 교육 프로그램/견습 과정 이수해야 함</p>
<p>건설 안전 훈련 감독자 (STSC) (Safety Trained Supervisor Construction)</p>	<p>30시간의 안전, 건강 및 환경 교육을 이수해야 함. 2년의 감독 경험 또는 4년의 산업 분야 근무 경험(자격을 얻으려면 근무 경험이 최소 파트타임[주당 18시간] 이어야 함) 또는 산업 안전, 위험 관리 또는 건설 관리 분야에서 준학사 학위 이상 또는 2년의 무역 또는 노동 조합 교육 프로그램/견습 과정 이수해야 함</p>
<p>인증 교육 트레이너(CIT) (Certified Instructional Trainer)</p>	<p>SH&E 전문 분야에서 최소 135시간의 교육, 훈련 또는 개발</p>
<p>공통</p>	<p>각 자격 시험 합격 및 인증 유지 관리를 위한 재인증 요구 사항 충족</p>

3) 영국 전문가 증인 서비스 (UK Expert Witness Service)

영국 전문가 증인 서비스는 법적 절차에서 전문가 의견과 증언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법원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정 분쟁에서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주의 법규위반 및 의무태만여부, 특정상황에 대한 법규 적용성 등을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원이 컨설팅기관의 전문성과 제3자로서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컨설팅기관의 역량제고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4) Alliance Program(AP) (미국)

OSHA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안전보건 민간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써, 미국내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OSHA에 한정된 직원으로 법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 노동조합, 업종별 단체, 전문가협회,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 유기적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OSHA와 산업안전보건관련 협력관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타 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적극적인 활동기관으로서의 인지도 획득 등의 장점이 있다.

5) 강사양성/관리자 프로그램 : Outreach Training Program (미국)

OSHA Outreach Program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 중 전문화된 강사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건설, 일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가르치기 위해 강사들에게 강사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발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OSHA의 대표적 훈련 과정이다.

NIOSH는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별교육 발굴 및 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16개 대학의 교육연구센터 (ERCs)를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OTI (OSHA 교육센터) 및 OTI가 지도 감독하는 12개 교육센터에서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내용과 리더쉽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집합교육만 인정하며 프로그램 관리 및 학생카드를 발급(OSHA 훈련원)을 일반과 건설업종으로 구분하여 주 5일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6) Susan Harwood Training Grant Program (미국)

OSHA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위험의 인식, 회피, 예방을 위한 교육 수행 비영리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관은 사업장 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2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이민자, 비영어 구사자, 문맹 등)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OSHA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업종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 소결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안전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역할을 검토한 결과 정부기관의 경우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독일은 연방노동사회성(BMA),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II-11).

〈표 II-11〉 국가별 정부기관 역할 비교

국가	정부기관	주요 역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산업안전보건 법규 준수 감독 ·사고조사 및 기술지원
영국	보건안전청 (HSE)	·산업안전보건 법규준수 감독 ·사고조사 및 기술지원 ·위험성 평가 검사 및 승인
독일	연방노동사회성 (BMA)	·산업안전보건 법규준수 감독 ·산재보험조합(BG)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감독

각 국의 정부산하기관으로는 미국에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있으며, 영국은 안전보건연구원(HSL), 그리고 독일은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다 (표 II-12).

〈표 II-12〉 국가별 정부 산하기관 역할 비교

국가	산하기관	주요 역할
미국	미국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NIO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안전보건 연구사업 · 근로자 교육훈련 사업 · 타 기관 및 민간조직에 대한 연구자금 지원 · 민간단체에 정보 및 교육 제공
영국	안전보건 연구원 (H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 수행 ·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 · 사고조사 및 근본원인 분석 · 위험성 평가 및 통제 · 교육훈련 제공 · 표준개발(Setting standards) · 대규모검사(Largescale testing) · 행동변화 및 작업자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독일	연방산업안전 보건연구원 (BAU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상태 및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평가 · 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가 · 인증기관 및 시험소 인정 · 기계기구 및 제품의 안전성 평가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안전청 자문 및 연구사업
한국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KOS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사업장 안전· 보건진단 또는 기술지원 · 위험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발간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는 국가별로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는 미국안전협회(NSC)와 안전기술자협회(ASSE)등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컨설팅, 연구사업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안전보건협회(IOSH), ROSPA, BSC 등이 있는데 이들 민간단체들도 교육, 컨설팅, 전문가 자격시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재해보험조합(BG)와 TUV등이 있는데 재해보상과 위험설비검사 및 교육과 관련한 정부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표 II-13은 각 국의 안전보건 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주요 사업을 비교 정리한 표이다.

〈표 II-13〉 각 국의 민간기관의 주요사업 비교

국가	민간기관	주요 사업
미국	미국안전협회 (NSC)	· 사업장 교육, 컨설팅 및 연구사업
	안전기술자 협회 (ASSE)	· 안전보건전문가를 위한 전문개발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기준 수립 및 인정사업 · 안전보건관련 포상 및 출판사업 · 안전보건 연구사업 · 대학교 장학금 지급 및 연구자원 지원

국가	민간기관	주요 사업
영국	안전보건협회 (IO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사업 · 정부기관 기술자문 · 안전보건전문가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사업
	NEBO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시험 및 평가 · 교육과정 개발 및 민간 기관에 교육과정 위탁
	ROS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가정, 도로교통, 학교, 레저분야 안전자문, 자원 및 교육 제공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Audit)서비스 · 공인 안전보건 자격 교육과정 제공 등
독일	재해보험조합 (B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 보상, 재활지원 업무 · 위험설비 검사 및 보호구 성능검정 · 안전보건 기술지도 감독 (주정부와 별도로 시행) ·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 사업장의 중대 위반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분야별 기술위원회에서 재해예방규정 및 시행지침 제정
	Tü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탁 시험· 검사업무 수행 · 증기 보일러· 압력용기· 리프트 콘베이어· 전기장치 등 검사
한국	대한산업 안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행 및 진단사업 운영 · 사업장 안전기술 서비스 제공 · 안전인 육성을 위한 KISA 장학금 운영
	대한산업 보건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생사업, 건강진단사업, 보건관리사업 · 학술조사연구사업과 산업보건연구소 운영

국의 민간단체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서비스와 안전감사(Safety Audit) 및 위험성평가 등의 자문 및 컨설팅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업안전 관련 컨설팅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 표준 제정 등 전문분야에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들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업안전보건시장이 형성되어 안전보건 민간단체들의 높은 매출은 물론 산업재해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예방활동 위탁 대행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제도화하여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조력자라고 하기보다 법에서 지정한 활동을 기업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위탁 대행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협력자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스스로가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설문조사 연구결과



Ⅲ. 설문조사 연구결과

1.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현황 설문조사

1) 선행연구 분석 및 설문 문항 설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일반 운영 현황과 위탁대행 서비스 사업의 산재 예방 기여도, 현 운영상 애로사항, 시장확대를 위한 필요, 요구사항,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DBpia)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제고 및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본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 문항은 1차로 연구진 검토 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담당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실 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완성하였다.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 일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13개 분야 공통 조사 항목 기관명, 수행 중 산업재해예방 서비스, 근로자수, 회원관리 (명), 안전관리대행 (개소), 자체검사(대수), 연 교육 수강생 수 (명), 진단 (제조/건설) (개소), 건설기술지도 (개소), 연매출, 사업기간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와 산재예방 서비스에 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주관적 기여정도와 그 이유, 해외 민간단체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민간재해예방 기관의 산재예방 기여도, 현재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 역량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 안전보건정책 중 대

행 위탁 사업에 대한 개인적 의견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등 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문항 내용

구분	분류	내용
1	사업 운영 현황	기관명, 직책, 근무기간, 산업재해 예방 위탁대행 서비스 분야, 조직 내 근로자수, 지원 사업장 수, 연 교육인원, 연매출액, 사업기간
2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예방 대행서비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여도에 대한 주관적 의견 ▪ 기여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그 이유를 우선순위로 응답 ▪ 산재예방활동 위탁대행 서비스 수행 중 애로사항 ▪ 해외 민간기관과의 산재예방 및 감소 기여도
3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 우선순위 ▪ 민간재해예방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요구사항 ▪ 산재예방 위탁대행 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 시장 확대에 대한 의견 ▪ 산재예방 활동 업무의 민간기관 위탁 및 이양 업무에 대한 의견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확대 계획 등 ▪ 시장 확대 및 전문성 등 역량강화 및 제고를 위한 추가 개선 필요 요구사항 작성

2)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한 항목인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표본배분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조사
조사대상	민간재해예방기관 13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대행, 건설재해예방지도 분야 ▪ 건강검진 (특검 및 야간특검 포함) ▪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 포함)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검사 (자율안전검사 포함)
조사방법	유선, 메일 등을 통한 섭외 후,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1차: 2024년 8월 5일 ~ 8월 23일 (3주) 2차: 2024년 8월 24일 ~ 9월 7일 (2주)
표본배분 방법	분야별, 지역별 비례배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일반 현황 조사를 위하여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수검 기관 중 안전보건공단 유관부서로부터 추천 받은 1,140곳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및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층화 추출에 의하여 368개 (32%) 기관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목표표본으로 선정한 기관은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지역별, 분야별 규모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13개 분야를 업무의 연속성 및 유사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또한 지역별 배분을 위하여 ① 서울/경기/강원, ② 대전 충청, ③ 경상, ④전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 배분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III-3은 본 연구의 대상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목록을 나타낸다.

〈표 III-3〉 민간재해예방기관 설문 대상

[단위 : 개소(%)]

번호	기관 분야	표본크기	목표표본 (%)	할당인원 (명)	표본 배분 반영	섭외 방법	
1	안전관리분야	120	30	36	지역 고려	- 1차: 공단 유관부서 추천	
2	보건관리분야	95		29	지역 고려		
3	건설재해예방 지도 분야	189		57	지역 고려		
4	건강진단 분야 (특수, 야간특수 포함)	229	30	69	지역 고려		- 2차: 연구진 선별 및 직접섭외
5	작업환경측정 분야	176		53	지역 고려		
6	석면조사 분야	124		37	-		
7	안전보건진단 분야 (명령진단 및 자율진단)	14	100	14	-		
8	안전인증, 검사, 자율안전검사 분야	21	100	21	-		
9	안전보건교육 분야 (직무 및 건설안전 기초교육 포함)	172	30	52	지역 고려		
계		1,140	-	368			

3) 설문조사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응답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며, 2차로 핵심 내용 범주화를 위해 대표 응답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서술형 문항별 응답빈도가 높은 단어, 의미 단위 및 핵심어 등을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항목은 전문가를 활용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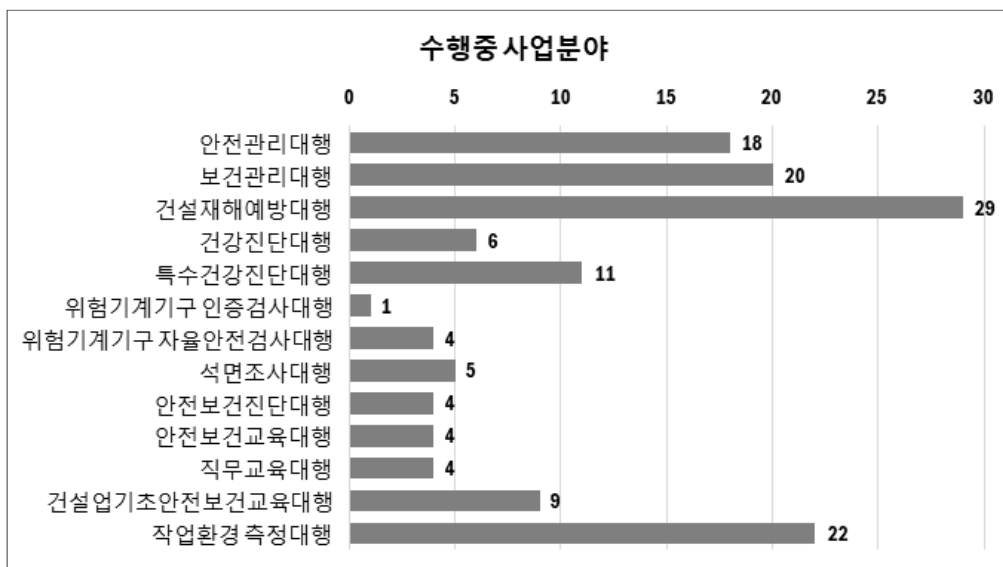
4)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일반 현황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수검 기관 중 안전보건공단 유관부서로부터 추천 받은 1,140곳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및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층화 추출에 의하여 368개 (32%) 기관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1차로 안전대행 등 13개 분야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및 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을 하였으며, 웹 및 모바일 설문 방식을 활용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5일에서 8월 23일까지 3주간 실시하였으며 목표표본 368개 중 137개 응답지가 회수되어 약 37.2%의 응답회수율을 보였다. 회수 된 137개의 자료 중 필수 문항에 대한 불성실 응답 및 오타, 결측 등의 자료 25부를 제외하고 112개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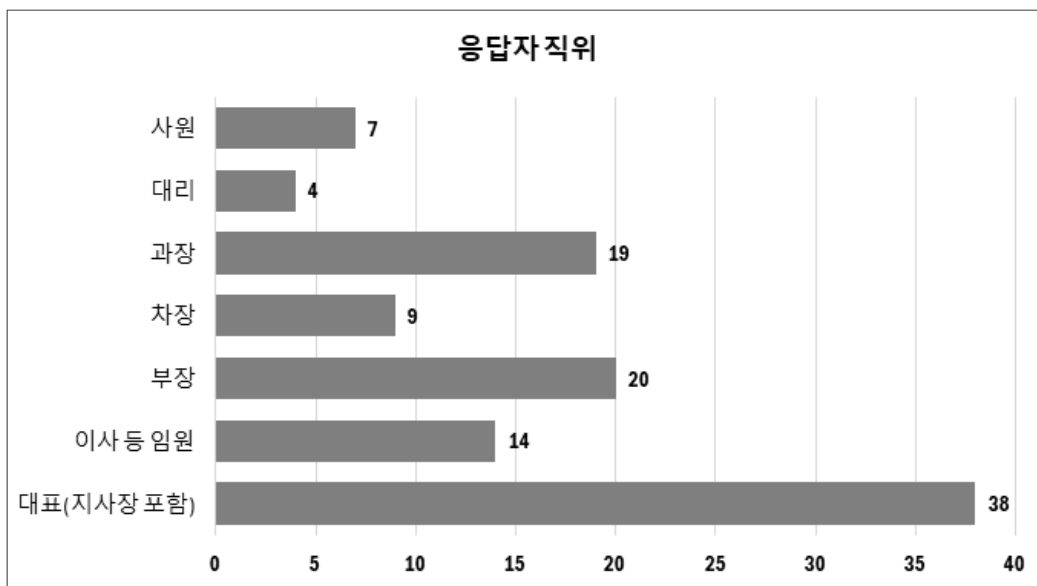
(1)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조사 일반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수행 중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안전관리대행 18개 기관(16.1%), 보건관리대행 20개 기관(17.9%), 건설재해예방대행 29개 기관(25.9%), 건강진단대행 6개 기관(5.4%), 특수건강진단대행 11개 기관 (9.8%), 안전인증·검사 1개 기관(0.9%), 자율안전검사 4개 기관 (3.6%), 안전교육대행 4개 기관 (3.6%), 직무교육대행 4개기관 (3.6%),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9개 기관 (8%), 작업환경 측정대행 22개 기관 (19.6%) 이 설문에 응답 하였다. 그림 Ⅲ-1은 본 조사에 응답 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수행 중 사업 분야를 나타낸다.



[그림 Ⅲ-1] 설문응답 기관의 수행 중 사업분야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지사장을 포함한 대표자는 38명이 응답하여 약 30.7%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사 등 임원급 응답자는 1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3%로 조사되어 대표자와 임원 이상의 직위의 대표자급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4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부장 20명(16.1%), 차장 9명(7.3%), 과장 19명(15.3%) 등으로 관리자급의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약39%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리 4명(3.2%), 사원 7명(5.6%)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설문응답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2] 설문응답 응답자 직위

설문조사 응답자의 현재 업무에서의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응답자가 3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2.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3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 19명 (17.0%),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16명(14.3%),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9명 (8.0%), 1년 미만 근무 1명(0.9%) 순으로 조사되어 안전보건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9.3%로 조사 되었다. 그림 Ⅲ-3은 설문응답자의 근무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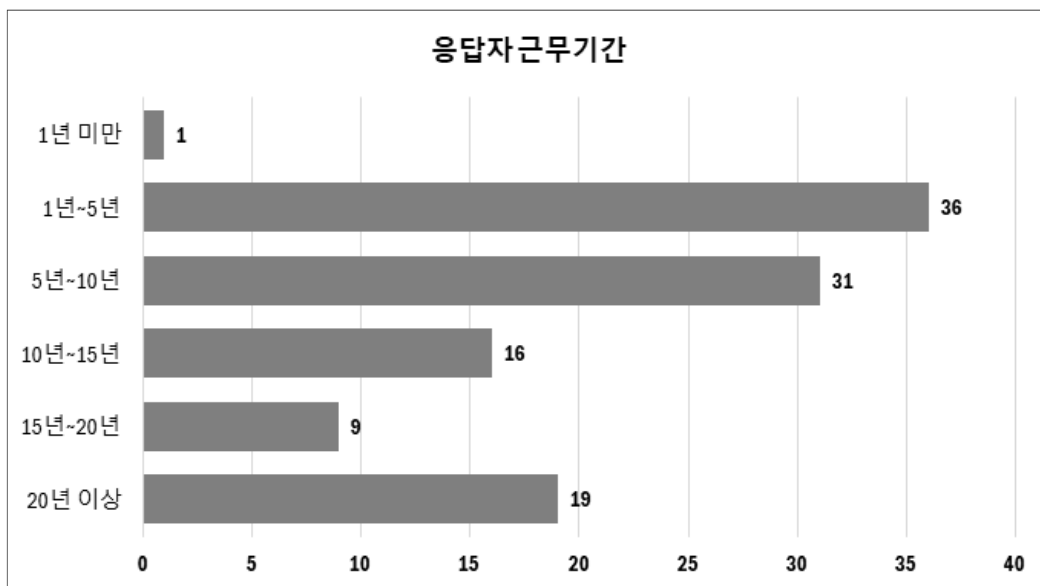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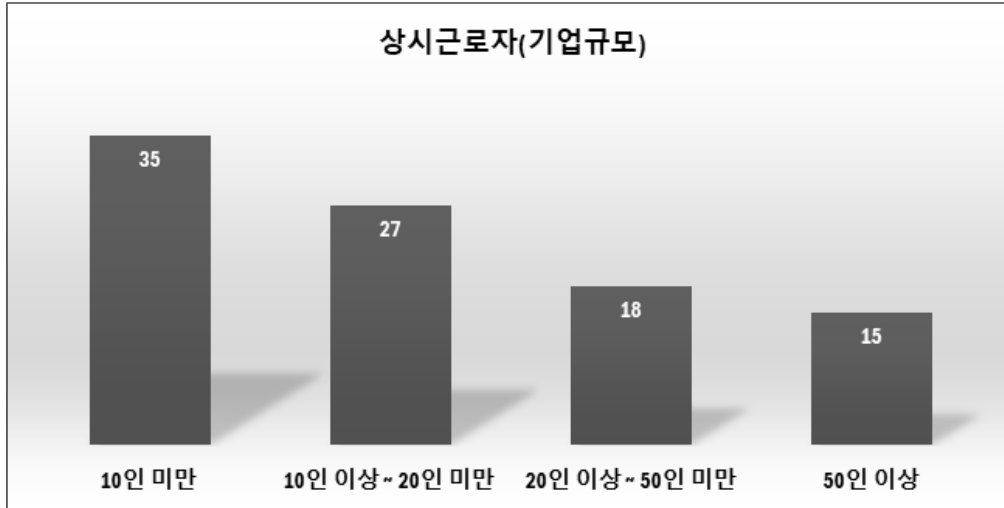


그림 Ⅲ-3] 응답자 근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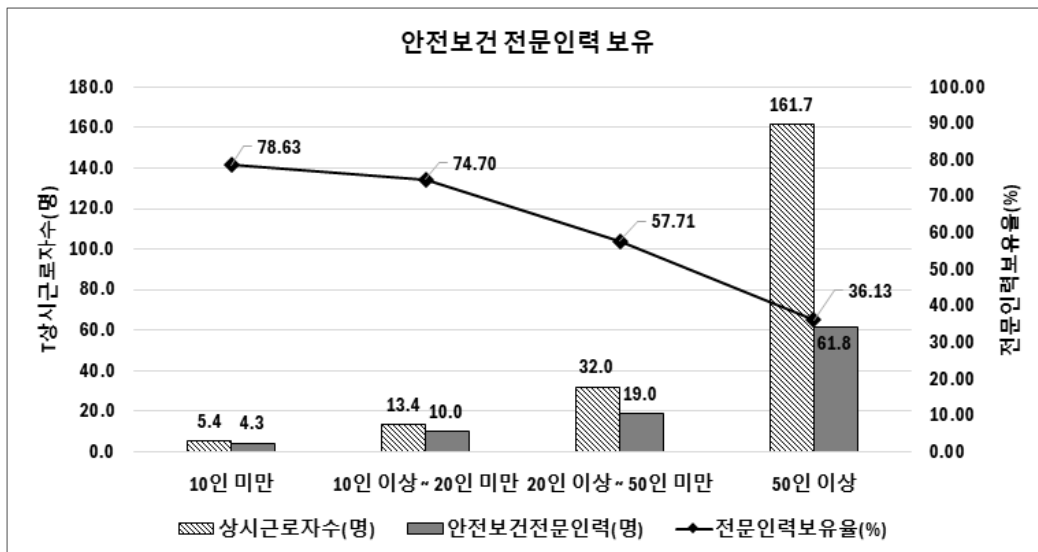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응답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보유율은 평균 61.79%(±8.4)로 조사되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규모의 기관은 35개소로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5.4명(±1.3)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평균 4.3명(±1.3)으로 조사되어 평균 78.63%(±11.8) 전문인력 보유율을 보였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3.4명(±1.5), 이 중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평균 10.0명(±1.8)으로 조사되어 평균 74.70%(±10.4)의 전문인력 보유율을 보였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8개소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32.0명(±4.7), 이 중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평균 19.0명(±6.0)으로 조사되어 평균 57.71%(±13.1)의 전문인력 보유율을 보였다.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개소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61.7명(±52.7), 이 중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평균 61.8명(±41.2)으로 조사되어 36.13명(±13.1)의 전문인력 보유율을 보였다. 표 III-4와 그림 III-4, 그림 III-5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상시근로자수와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보유 비율을 나타낸다.

〈표 III-4〉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균 전문인력 보유율

	응답 수 (개소)	상시근로자 수 (명)	안전보건 전문인력 (명)	전문인력 보유율 (%)
10인 미만	35	5.4 (±1.3)	4.3 (±1.3)	78.63 (±11.8)
10인 이상 ~ 20인 미만	27	13.4 (±1.5)	10.0 (±1.8)	74.70 (±10.4)
20인 이상 ~ 50인 미만	18	32.0 (±4.7)	19.0 (±6.0)	57.71 (±13.1)
50인 이상	15	161.7 (±52.7)	61.8 (±41.2)	36.13 (±13.1)
평균		53.14 (±31.7)	23.78 (±11.3)	61.79 (±8.4)



[그림 Ⅲ-4] 민간재해예방 상시근로자(기업규모)



[그림 Ⅲ-5] 민간재해예방 안전보건 전문인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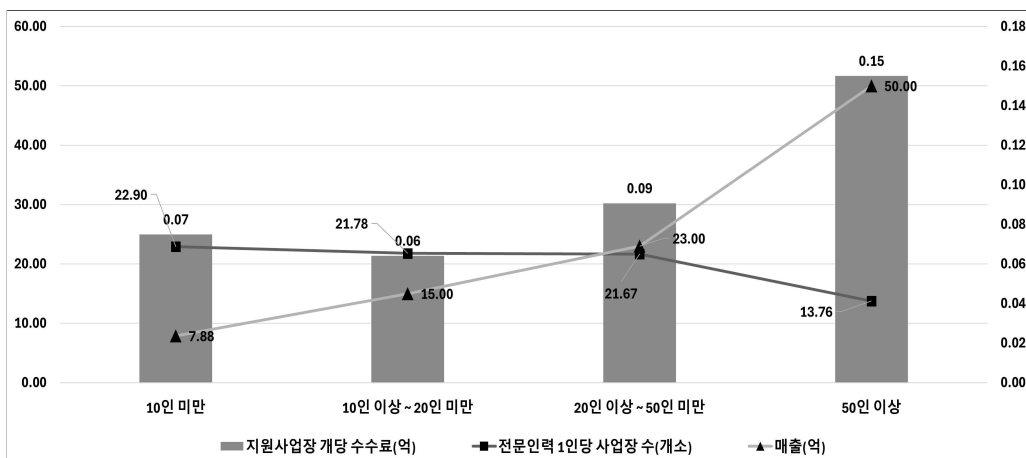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응답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관리 대행 등 13개 분야의 대행 위탁 지원 사업장은 평균 228.98개소(±39.32)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1인당 지원 사업장은 평균 19.76개소(±9.04)로 나타났으며, 지원 사업장 당 평균 수수료는 연 0.1억원(±0.18)으로 조사되었다. 10인 미만 규모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 평균 105.29 개소(±61.7)의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전문인력 1인당 지원사업장은 평균 22.9 개소(±8.6)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장 1개소당 연평균 수수료는 0.07억(±0.1)이다. 10인 이상~20인 미만 규모의 기관은 지원 평균 사업장 수 234.15 개소(±102.1),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1인당 평균 지원 사업장 21.78 개소(±8.75)로 조사되었으며, 1개 사업장 당 연평균 수수료는 0.06억(±0.45)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기간은 평균 14.91년(±5.25) 이다.

20인 이상~50인 미만 기관은 평균 지원 사업장 253.83개소 (±154.7), 1인당 평균 지원사업장 13.76개소 (±8.2), 사업장당 연평균 수수료는 0.09억(±0.95)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사업기간은 16.69년(±5.15) 이었다. 50인 이상 규모의 기관은 지원 평균 사업장수 322.67 개소(±148.2),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1인당 평균 지원 사업장 13.76 개소(±8.2)로 조사되었으며, 1개 사업장 당 연평균 수수료는 0.1억(±0.18) 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기간은 평균 13.69년(±1.48)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지원하는 사업장 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장 당 수수료도 적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소규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경영 애로사항이 전문성 등 자기계발과 사업장 제공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제공 여건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5와 그림 III-6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균 지원사업장 수와 안전보건전문인력 1인당 지원하는 평균 사업장 수를 나타낸다.

〈표 Ⅲ-5〉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원사업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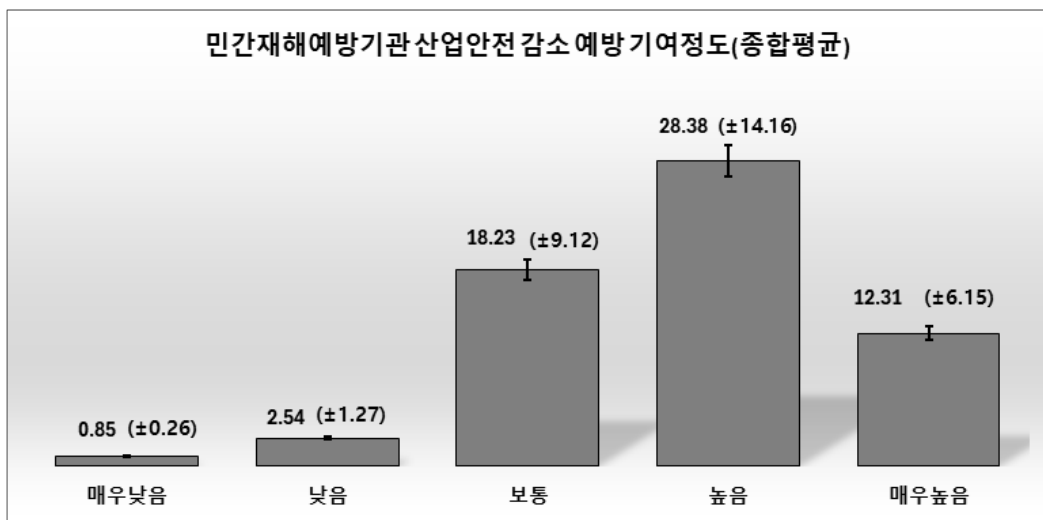
	지원 사업장수 (개소)	1인당 지원 사업장 (개소)	연매출 (억)	사업장당 수수료 (억)	사업 기간 (연)
10인 미만	105.29 (±61.7)	22.9 (±8.6)	7.88 (±2.4)	0.07 (±0.1)	8.75 (±3.9)
10인 이상 ~ 20인 미만	234.15 (±102.1)	21.78 (±8.75)	15.17 (±3.65)	0.06 (±0.45)	14.91 (±5.25)
20인 이상 ~ 50인 미만	253.83 (±154.7)	21.67 (±17.1)	23.04 (±10.8)	0.09 (±0.95)	14.39 (±4.55)
50인 이상	322.67 (±148.2)	13.76 (±8.2)	50.38 (±47.5)	0.15 (±0.15)	16.69 (±5.15)
평균	228.98 (±39.32)	19.76 (±9.04)	24.37 (±1.74)	0.10 (±0.18)	13.69 (±1.48)



[그림 Ⅲ-6] 전문인력 1인당 사업장수 및 사업장 당 연간 평균 수수료

(2) 민간재해예방기관 산재 감소 및 예방활동 기여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대행 서비스 활동이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대한 기여도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높음’으로 응답한 인원이 평균 28.38명(±14.16),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인원이 평균 12.31명(±6.15)으로 전체 약 65.3%의 응답자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낮음’으로 응답한 인원은 평균 2.54명(±1.27), ‘매우낮음’으로 응답한 인원은 평균 0.85명(±0.26)으로 나타나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5.4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약 18.23명(±9.23)의 응답자는 기여도 수준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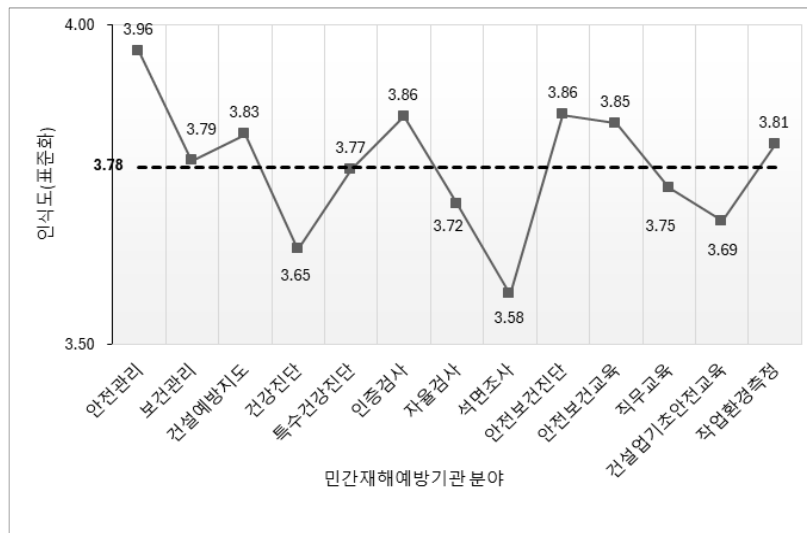


[그림 III-7]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도(종합)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대행 서비스 활동이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의 기여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를 민간재해예방기관 각 13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관적 인식도를 각 분야별 기여정도의 가중치와 응답자의 수로 표준화하여 계산하였으며, 표준화된 인식도의 평균은 3.78(±0.05)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대행(3.96)’ 분야가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진단(3.86)’과 ‘안전인증(3.86)’ 분야, ‘안전보건교육(3.85)’ 분야, ‘건설재해예방지도(3.83)’, ‘작업환경측정(3.81)’, ‘보건관리(3.79)’ 분야가 평균(3.78)보다 높아 비교적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3.77)’, ‘직무교육(3.75)’, ‘자율안전검사(3.72)’, ‘건강진단(3.65)’, ‘석면조사(3.58)’ 분야는 비교적 기여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8은 민간재해예방기관 각 분야별 산재 감소 및 예방에 대한 기여도의 인식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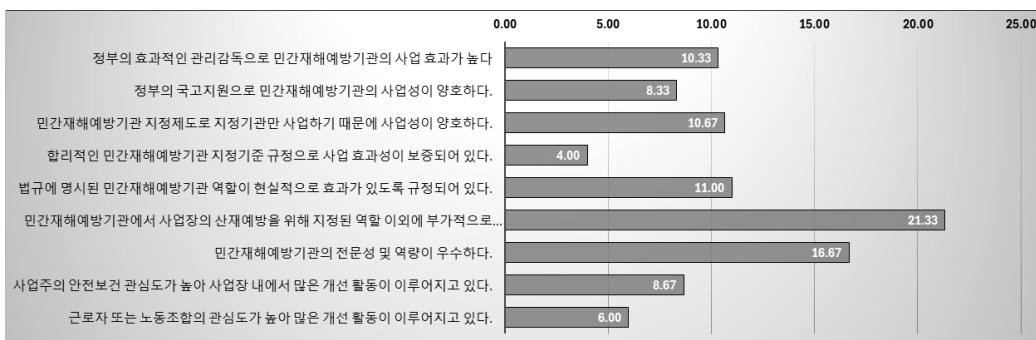


[그림 Ⅲ-8]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도 (각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대행 서비스 활동이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을 조사하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역할 이외에 부가적 노력을 하고 있다’에 1순위(21.33명(±3.3))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의견에 16.67명(±1.18), ‘법규에 명시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11명(±1.08) 응답하여 3순위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근소한 차이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제도로 지정기관만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다’라는 의견에 10.67명(±2.49),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효과가 높다’라는 의견(10.33명(±2.01))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III-9는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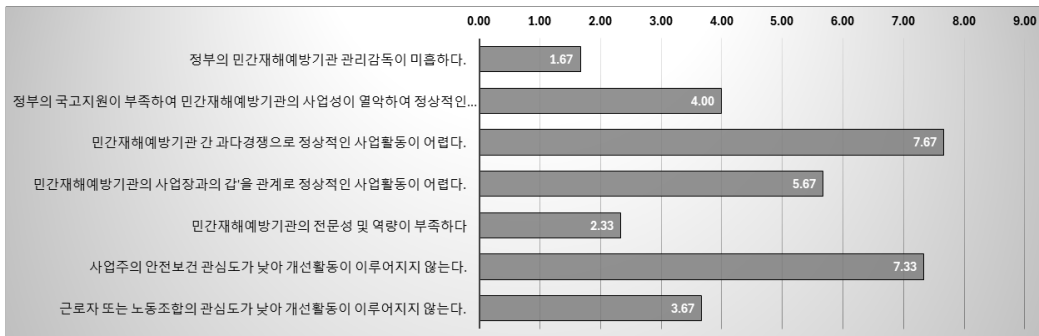


[그림 III-9]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이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대행 서비스 활동의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의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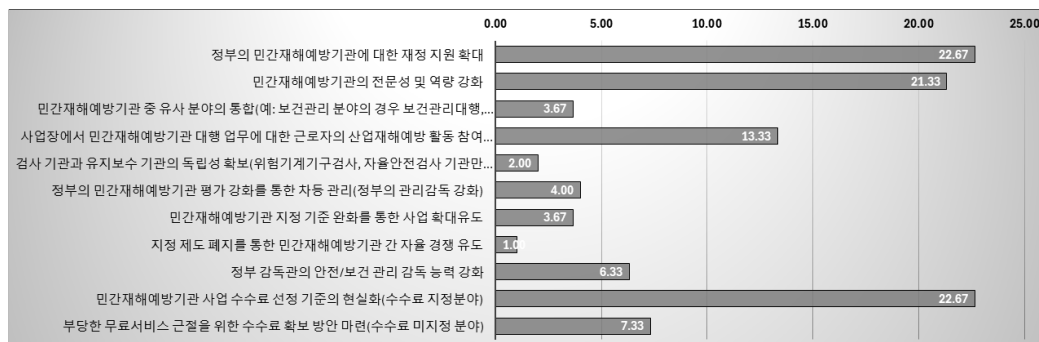
그 결과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7.67명(±1.80))’라는 의견이 1순위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심도가 낮아 개선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7.33명(±0.47))’가 2순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장과의 갑을관계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어렵다(5.67명(±0.62))’가 3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국고지원이 부족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어렵다(4.00명(±0.70))’,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관심도가 낮아 개선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3.67명(±1.43))’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그림 Ⅲ-10은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10]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인식정도에 대한 부정적 이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내 안전보건 예방 관련 시장을 활성화기 위한 개선방향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22.67명(±6.18))’와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수수료 선정 기준의 현실화(수수료 지정분야)(22.67명(±0.62))’를 개선 분야 1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개선방향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21.33명(±1.18))’를 2순위, ‘사업장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행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참여 확대(안전점검, 제안한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개선이 13.33명(±0.47) 3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1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III-11]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5) 소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일반현황과 안전보건 위탁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규모와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평균 5.4명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약 36.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10인 이상~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평균 13.4명(28.42%), 20인 이상~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평균 32명(18.95%),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161.7명(15.79%)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경우 1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평균 4.3명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보유율은 전체 근로자수 대비 78.6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0인 이상~20인 미만의 규모의 기관에서 74.6%의 보유율을 보였으며, 20인 이상~50인 미만 규모의 경우 57.71%, 50인 이상 규모는 36.13%로 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보건 전문인력 보유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안전관리 등 13개 분야의 위탁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장은 평균 228.98개소(±39.32)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1인당 지원 사업장은 평균 19.76개소(±9.04)로 나타났으며, 지원 사업장 당 평균 수수료는 연 0.59억원으로 조사되었다.

10인 미만 규모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 평균 105.29개소의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1인당 지원사업장은 평균 22.9 개소, 지원사업장 1개소 당 평균 수수료는 연 700만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규모의 경우 지원사업장 평균 234.15개소, 전문인력 1인당 지원 사업장 21.78개소이며, 사업장당

수수료는 연평균 약 600만원 수준이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기관은 연평균 253.83개소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균 수수료는 약 900만원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지원사업장은 21.78개소로 조사되었다. 50이상 규모의 경우 322.67개소에 서비스를 지원하며, 1개소 사업장 당 연 평균 약 1,600만원, 전문인력 1인당 13.76개소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이 많은 경향을 보이며, 사업장 1개소 당 평균 수수료도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 10인 미만 규모의 기관이 가장 많으며, 안전보건전문인력의 비율은 높고 전문인력 1인당 담당하는 사업장은 응답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인력의 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인력의 대부분이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1인당 담당하는 위탁대행 서비스 사업장의 수 또한 많으며 사업장 1개소당 평균 서비스대행 수수료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1명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안전보건 위탁대행 서비스 업무 이외에도 영업 업무와 신규 고객 상담 업무, 기타 사무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노출되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자기계발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장에 제공되는 안전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 대행 위탁 서비스 제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대행 서비스 활동이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의 기여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인식도의 평균은 3.78(± 0.05)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대행(3.96)’, ‘안전보건진단(3.86)’, ‘안전인증(3.86)’, ‘안전보건교육(3.85)’, ‘건설재해예방지도(3.83)’, ‘작업환경측정(3.81)’, ‘보건관리(3.79)’ 분야가 평균(3.78)보다 높아 비교적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수건강진단(3.77)’, ‘직무교육(3.75)’, ‘차출안전검사(3.72)’, ‘건강진단(3.65)’, ‘석면조사(3.58)’ 분야는 비교적 기여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이유로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역할 이외에 부가적 노력을 하고 있고, 현행 법 상 안전보건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사항이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산재 감소 및 예방활동의 기여도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과다경쟁과 민간기관과 사업장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개선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위탁 대행서비스 활동은 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객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 재해예방 기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관리 기술지원 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관리의 현장 작동성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키워드를 추출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산재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언 사항을 도출한 AHP 분석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설계

산업안전보건법상 활동 위탁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현황 조사를 위하여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대상 1,341개 업체 각 13개 사업분야 별 중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중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며, 각 단체별 지정 사업 분야를 정리하고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위탁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현황 및 역량제고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 항목을 기본으로 실문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로는 수집하기에 제한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표 III-6은 심층인터뷰에서 활용할 질문 목록을 나타낸다.

〈표 III-6〉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등 관련자 대상 심층인터뷰 목록

분류	내용
면담목적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분석 연구
기본자료	귀하의 성함과 소속, 산재예방 관련 업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행위탁업무 경험 등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분류	내용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예방 등 안전보 건활동의기여도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 (고용부 지정기관)들은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민간재해예방 기관 운영 관련 문제 인식 및 의견	그동안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사업장 산재 예방활동 위탁 대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실효적 효과성이 있는지? 등
	산재예방활동 대행 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에서 현재 운영상의 가장 어려운 점(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분류	내용
민간재해예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 한 의견	우리나라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나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안전보건 관리대행,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진단, 건강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사업장에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 안전분야 통합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 (자율), 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 검사, 건설지도 등) 2. 보건분야통합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특별건강검진 포함), 보건진단, 보건교육 등)
	효과적인 통합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야들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련 업무 중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 또는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가 있다면 해당업무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역 량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귀 기관에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떠한 부분인가요?
	향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활동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인터뷰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개별 방문과 FGI (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수행 일정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등 관련자 대상 심층인터뷰 일정

구분	분야	면담인원 (명)	수행일정
1	정부기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	8월 3주
2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민간컨설팅기관 (안전관리, 건설재해예방지도, 작업환경측정, 안전인증, 안전보건교육)	11	8월 4주
3	위탁·대행 서비스 수요 사업장	2	8월 5주
4	지방자치단체	1	9월 1주
계		16	

2) 심층인터뷰 면담조사 결과

심층인터뷰 면담조사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대상 1,341개 업체 각 13개 사업 분야 별 중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중 20여 곳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공문발송, 메일,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관계자 및 지자체, 위탁서비스 수요사업장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인터뷰 하였다. 면담조사는 미리 제작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1인당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조사는 실정에 맞춰 방문조사, 화상회의, 집단회의, 서면, 유선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24년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하였고 총 1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조사 내용을 연구진이 직접 입력한 서면자료와 면담 참여자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4가지 항목(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예방 등 안전보건활동의 기여도, ② 현재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관련 문제점, ③ 민간재해예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 ④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필요사항)으로 나누어 질적분석 과정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 키워드 추출 분석을 활용하여 응답빈도가 높은 단어 및 형태소로 추출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면담조사 참여자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공단 등 2명,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민간컨설팅 기관 등 11명, 위탁·대행 서비스 수요 사업장 2명, 지방자치단체 1명으로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대상의 기관별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근무경력은 평균 17.62년(±4.75)으로 최소 3년에서 최대 3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은 본 연구 면담조사 참여자의 인원과 관련 업무 평균 근무경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8〉 심층인터뷰 면담조사 참여자

구분	소속	참여인원(명)	평균 근무경력(년)
1	정부기관	2	6.20(±0.50)
2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민간컨설팅기관	11	23.03(±2.94)
3	위탁·대행 서비스 수요 사업장	2	6.20(±1.75)
4	지방자치단체	1	3.00(±0.00)
계		16	17.52(±4.84)

(1)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재 감소 및 예방활동에 대한 기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대행 서비스 등 산재 감소 및 예방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기관 관련 참여자의 경우 사업장 점검 활동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1인당 담당 사업장이 너무 많아 모든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점검 및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활동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민간컨설팅기관의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국고지원사업 수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대행 위탁 서비스의 이행,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ISO 45001:2018)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법규상 산재예방활동 및 체계구축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지도 점검 활동에 대한 산재예방 기여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활동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으나 최근 적용된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의 필요에 따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9).

〈표 III-9〉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의견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점검 및 감독 활동 다수 • 감독주체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과다하여 효과적 관리감독이 어려움 •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장의 현장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움 •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며 민간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다만,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관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p>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p>	<p>민간재해 예방기관 및 민간건설 팅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사업장 서비스 제공 시 안전관리 필요 정보 제공 및 타 사업장 우수사례 전파 등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 월 2회 현장방문지도를 통해 담당자와의 1:1 대화식 기술지원으로 사업주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의 기능이 산재예방에 기여 • (안전관리) 안전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 루트가 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 기여도 측면에서 분야별 차이가 있음. 국고사업의 경우 개선이행률 미비로 기여정도는 낮다고 생각함 • (건설재해예방) 과거 건설업체와의 직접계약이 발주자 계약으로 법이 개정되어, 지도기관의 독립적 지도가 가능하게 되어 기여도가 올라감 • (건설재해예방) 건설현장 특성상 개선 방법을 알아도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사 및 전문가가 현장 맞춤형 지도를 하여 산재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 (안전보건교육) 전문성있는 강사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이 사업장 안전교육 및 산재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안전진단) 많은 사업장이 위탁대행 서비스 시 법규 만족 차원의 최소한의 관리를 요구함 •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 시 기준 이하까지 반복 측정을 요구, 기준 이하가 나오도록 측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의 기능은 떨어짐 • (안전인증·검사) 주기적 인증검사를 통해 점검과 관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 (컨설팅) 안전경영체계 인증의 확산으로 체계구축 확산 및 이해의 측면에서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이해도 높아지고 있음 • (컨설팅)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구비 서류 및 활동 전반에 대한 표준화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산재예방활동에 기여함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위탁·대행 서비스 수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업무 초기에는 민간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대행서비스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안전관리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현재는 기술지도로 전환하여 직접 안전관리 수행 중 • 기술지도의 목적은 현 안전관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과 타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큼 • 보건관리의 경우 회사 운영 방침 상 보건관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기능은 만족하지만 사업장 내 지속적 보건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 • 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대부분 교육은 안전관리자 직접 수행 중 (현재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선임 중)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분명히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함 • 동종 산업의 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등 관련 자료 등 공유를 목적으로 안전관리 대행 및 기술지도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지방자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산업재해예방의 노력은 없었음 • 최근 안전보건관리 대행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기관 안전담당자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에 집중된 업무로 안전 관리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안전보건 관리 측면의 체계적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2) 현재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관련 문제점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정부기관 관련 참여자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각 구성원이 느끼거나 경험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정부기관의 경우 안전관리,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지도 등 분야에서는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소규모 조직으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기술력, 전문성 등 역량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민간기관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급여, 근무조건 등이 열악하여 민간기관 소속 인력의 잦은 이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었다.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대행 전문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지도요원 1인당 최대 30개소의 사업장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일상적인 기술지도는 1인 수행이 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지도요원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관을 선정하는 주체가 사업주가 됨으로써 민간기관은 사업장에 대한 ③기술지도를 함에 있어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 국고 지원사업 등 정부 위탁업무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수수료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덩핑으로 인한 저가 수주와 운영 상의 고급인력 채용 기피가 생산 품질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안전보건진단 분야의 경우 진단 수주 물량이 대부분 명령진단으로 이루어지나, 수주 물량이 거의 없는 현실이며 이에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행 등 업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안전보건진단의 사고예방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후 조치 방식의 명령진단보다 자율안전보건진단 시행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장려 제도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여 사전 조치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사고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진단기관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위탁·대행기관도 해당된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보건 위탁·대행기관과 지도기관의 수가 증가하여 사업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시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민간기관 인·허가를 위한 기준 상향 등 법률 개정과 안전보건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한 적정단가의 수립 및 공표, 시장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안전보건 관리 등에 대한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양적 평가 중심에서 민간기관의 지도기술 및 전문성, 시설, 인력 등의 질적 평가로의 개편의 필요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연장, 포상 및 적극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하위(D등급) 기관 및 3년 이상 실적이 없이 고용부 지정기관이라는 홍보용으로 유지하는 미흡 기관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및 등록 취소 등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민간기관 권한 확대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는데, 현재의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도 목적의 점검 활동을 넘어선 고용노동부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 중인 정기적 점검 수준의 감독의 권한으로 확대·이양하여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 III-10은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나타낸다.

〈표 Ⅲ-10〉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기여도 의견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p>현재의 민간재해에 방기관 운영 관련 문제점</p>	<p>정부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지원 및 관리) 민간기관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규모 기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관 간 격차가 매우 크며, 산업재해예방보다는 영리추구 목적 위주로 이행 • (민간기관 협의체) 민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기술력, 전문성 등 역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기관운영지원 및 관리) 민간기관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어 급여, 근무조건 등이 열악하여 민간기관 소속 인력의 잦은 이직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 적정 수수료 기준) 정부 위탁업무를 제외하고는 대가 수수료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서 저가 수주, 고급인력 채용 기피, 생산 품질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과당경쟁 조정장치 마련)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덤핑 경향 • (민간기관 지도업무 개편) 현행법상 지도요원 1인당 최대 30개소의 사업장까지 관리가 가능 • (민간기관 지도업무 개편) 일상적인 기술지도는 1인 수행이 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지도요원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편차 발생하고 있음 • (민간기관 권한 확대) 기관을 선정하는 주체가 사업주가 됨으로써 기관은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형성 • (수요 공급 적정책 마련)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명령진단 수요만 있는 상태로 명령진단업무 수행에 그치고 있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 수주(수행) 물량 부족으로 진단기관의 존립 기반 위축 • (안전보건 각 주체 간 역할 정립) 민간기관 소속 지도요원도 우월적 지위에서 기술지도 등 업무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필요 • (과당경쟁 조정장치 마련)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간의 기술역량 구분과 사업총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규모/참여범위 등) 필요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p>현재의 민간재해에 방기관 운영 관련 문제점</p>	<p>민간재해 예방기관 및 민간건설 팅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적정 수수료 기준) 국고 지원사업 등 정부 위탁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지도 서비스의 수수료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덤핑으로 인한 저가 수주 등 운영 문제 • (기관 관리제도 개선) 평가 등급에 따른 상벌제도 명확화 필요. 안전보건 관리 지도의 특성 고려하여 양적 평가에서 민간기관의 지도기술 및 전문성, 시설, 인력 등의 질적 평가로 개편 필요 • (기관 관리제도 개선) S(매우우수) 등급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D(미흡) 등급에 대한 확실한 제재조치 등 패널티도 없음 • (기관 관리제도 마련) 교육기관, 법무사기관 등 안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난립 • (안전보건진단) 진단 수주 물량이 대부분 명령진단으로 이루어지나, 수주 물량이 거의 없는 현실 • (과당경쟁 조정장치 마련) 위탁·대행기관과 지도기관의 수가 증가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과당경쟁으로 수수료 덤핑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소극적이고 형식적 점검 및 지도의 반복 • (민간기관 권한 확대) 민간기관 지도요원에 대한 사업장의 무시하는 경향으로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미조치 사례 다수 발생 • (안전보건 각 주체 간 역할 정립) • (민간기관 협의체 운영) 기관 간 전문성 등 현장 안전관리 및 개선 사항 간극 발생 • (산업장 안전보건 의식) 국고사업은 개선사항 이행률이 미비함 (사업주 의지가 거의 없음) • (안전교육 감독 관리 강화) 사업장 자체 교육 시 전문성 결여, 교육 내용에 대한 미비함 다수 발생 • (전문성 등 역량확보) 전문성 있는 경력직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 이에 따른 전문성이 점차 저하되는 것이 체감되고 있음 • (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50인미만 국고지원사업은 사업장 부담비용이 없어 기대감도 낮음 • (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3)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포함 한 산재예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정부기관 응답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안전보건기술 지원 사업수행체계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지도·점검 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꾸준한 교육이 필수이므로 교육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한 안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업종과 유형에 따른 홍보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효과적 사고 및 질병 예방활동에 대한 효과적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위탁·대행 제도의 대대적 개편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현행 시행 중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 대행 기관 활용 가능 기준을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모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토록 하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통한 주기적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현행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위탁·대행 제도의 전면적 개선도 제안하였는데,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등 기술지도 요원의 사업장 점검 방문 횟수 등에 대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사업

장 방문 횟수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월 2회로 지정되어 있으나, 업종별 사업장 위험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방문 횟수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하며, 시간의 총량을 정한 지도요원의 탄력적 수행이 가능한 시간 개념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의 개선과 무관용의 법적 제재가 필수이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관리제도, 교육 등의 제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경우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의 추진 및 감독 기능의 이양을 통한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권한의 확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기관의 육성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지도업무 등에 대한 사업 진입 장벽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지정되는 기준은 인력과 시설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기관 설립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으며, 신생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은 현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전문성이 결여된 신설 전문기관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며, 계약 형태에 있어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수수료 덩핑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산재예방 관련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개선의 의견이 있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5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인원에 따른 선임기준보다는 실제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설비 및 작업 환경, 취급 유해인자 등을 고려한 위험성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표 III-11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제안사항을 나타낸다.

〈표 Ⅲ-11〉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민간재해 예방기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상 강화 방안 마련 •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 민간(기술지도, 교육, 진단 등)기관 협회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수수료를 책정 및 합의하고 기관의 규모와 평가 등급(순위)에 따른 공정한 사업 물량 배분 등을 논의 등 기능 • 민간기관 평가의 위탁업무 수행 중심 평가기준 마련 검토 • 지도요원 1인당 관리사업장 수를 축소하고 방문 횟수를 증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방문횟수 지정 관리) • 기관 선정 주체를 정부기관(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수요 사업장 매칭 방식으로 개편 • 민간기관의 컨설팅 업무를 사업장 인센티브로 연계하여 자율적 참여 동기 부여 필요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간의 기술역량 구분과 사업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규모/참여범위 등) 필요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민간컨설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현장점검분야 이양(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만 수행)사전적 예방활동으로의 명령진단 확대 시행 • 공단업무의 이관 : 일부 교육사업, 정부 지원사업, 검사·인증 등 위탁사업외부교육 의무화 대상 선정 (업종별, 규모별 기준 마련) • 법 개정을 통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인허가 기준 상향 재편 •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상 강화 방안 마련 •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지자체 등 역할 재정립 •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시 • 소규모 사업장 안전대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기관평가가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노력 •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형 서비스 확대 마련 • 법 위반 시 처벌 및 제재조치 철저 이행을 위한 노력 • 자체선임 사업장의 안전교육 철저 감독 • 민간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 안전보건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감독 지도 강화 방안 마련 • 유사성격 기관 인력 시설 등 기준 재 조정을 통한 중립기관 육성

(4)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노력해야 할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기관 관련 참여자의 경우 산업분야별 업종 등 특성화된 안전보건 전문지도기관 및 종합기관의 육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장에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원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각 분야별 특성화된 전문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및 대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중심의 사고예방체계를 도입하는 등 안전 보건 관리 등의 노력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예방감독)을 유예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보건진단, 컨설팅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가능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및 공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우수사업장과 미흡사업장의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 적정 물량 배분 및 정부 사업 참여 우선 혹은 제재 등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또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특수 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이행평가제도 법제화를 통한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참여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감독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와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 역할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도요원 등 관련 업무 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횟수, 커리큘럼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시장상황에 맞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의 적시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를 통해 전문인력 파악 시스템 구축하고 전문인력풀 등을 활용한 인력의 수급의 원활함을 위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Ⅲ-12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기관의 노력 등 필요사항을 제안한 의견을 나타낸다.

〈표 Ⅲ-12〉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민간재해 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등급에 따른 상벌제도 명확화 •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외부 전문가 인력풀 지원 • 2인 1개조 업무수행을 통해 선·후임간 지식공유 기회 마련 • 민간기관 내부의 정보공유 체계를 정립하여 사고발생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기술지도 등 인력 간 공유책 마련 • 민간재해예방기관 재정적 지원 실시로 안정적 기반에서 조직운영으로 소속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가능하여 우수인력 확보 가능 • 민간재해예방기관 소속 인력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필요 • 민간기관 활용 가능하도록 분야별 기술자료 제공

항목구분	소속	주요내용
<p>민간재해 예방기관 전문성 등 역량제고를 위한 필요사항</p>	<p>민간재해예방기관 및 민간컨설팅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 수수료 기준 정립, 위탁 대행 수수료 현실화 • 민간재해예방기관 재정적 지원 실시 •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위임에 따른 권한 강화 • 분야별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 •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덤핑 방지 방안 마련 (서비스 수수료 최소 기준 공표) • 민간기관 인력을 대상 개인별 경력/교육 이력 관리 (최초, 전문과정을 구분, 일정 기간마다 필수 교육시간 이수 등) • 법개정을 통한 지도 요원 경력 강화 • 평가지표개정(대형 사업장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비중 확대) • 유사 기관의 인력 시설 등 기준 재조정 종합기관으로 통합 운영 제도 마련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재해예방기관 제도 등에 관한 그 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 제도로는 사고성 산업재해 예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요원의 대행사업장 방문횟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한계, 기술지도 방식 등 안전관리 대행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¹⁾,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원 활동이 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 예방 기여, 기술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²⁾.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한 시장의 메카니즘에 의해서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치안과 국방 서비스 등이 대표적 공공재이다. 안전과 보건은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거나 또는 공급된다 할지라도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공공재(Public Goods)라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공공재로서의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 등의 개입과 직접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징으로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비경합성(Non-rivalry)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 1) 송석진(2020),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번기동(202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활동이 고객만족도 및 재해예방 기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란 배제불가능성이라고도 하며, 일단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주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서비스로서의 공공재는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 만큼의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소비자 이외의 다른 소비자를 그 재화의 이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안전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공공재이므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직접적인 활동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³⁾.

그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한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은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관의 설립 인·허가를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등록하여 시장경쟁 체제에서 기관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재의 기본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해예방기관의 각종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의견이 많았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 국고대행사업,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등은 산업안전보건을 공공재로 관리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에 효과적이다.

국가 지원사업을 참여 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전문기관으로 한정하고 등록된 기관의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가 사업장에 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구성 요건에 기술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이면

3) 양기근 외(2017),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 국정관리연구

지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경영 측면에서는 최소 경력자를 채용하는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작동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저해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요원 경력에 따른 등록 기준과 지도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직무교육 및 커리큘럼의 마련과 제공이 필요하며, 동 분야 우수한 경력자가 기술지도 요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의 하나의 축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있는 기술지원 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1) 선행연구 분석 및 설문 문항 설계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산재예방 대행위탁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요기관 사업장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는 2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로, 2023년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기관평가실에서 수행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산재예방 대행위탁 서비스 수요기관의 민간재해예방 위탁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및 서비스 인식정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 요구 사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1) 수요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반적 만족도 조사는 2023년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기관평가실에서 수행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격년 평가로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2022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표본은 민간재해예방기관 12개 분야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

안전보건 교육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으로부터 위탁 대행 서비스를 받은 1,416개 사업장 대상 31,77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Ⅲ-13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민간 재해예방기관 분야별 응답 표본을 나타낸다.

〈표 Ⅲ-13〉 만족도조사 설문 분석 응답자 비율

구분	분야	응답자수(명)	사업장(개소)
1	안전관리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지도	11,774	493
2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건강점진 (특검, 야간특검)	10,069	690
3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교육	9,300	212
4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	636	21

(2) 민간재해예방 위탁대행 서비스 인식도 조사

산재예방 위탁대행 서비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DBpia)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 문항은 1차로 연구진 검토 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담당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자 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완성하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 등 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실태조사 설문문항 내용

구분	분류	내용
1	사업 운영 현황	업종, 지역, 규모, 직책, 사업장 안전보건 예산편성 여부,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의 처리 절차 등
2	산재예방활동 대행위탁 서비스 인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받고 있는 위탁서비스 분야 ▪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자문 방법 ▪ 위탁대행 서비스 이후 안전사고 감소 여부 ▪ 위탁대행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의견 ▪ 위탁대행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그 이유는? ▪ 민간재해예방기관 선택 경로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의견 ▪ 위탁대행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구분	분류	내용
3	민간재해 예방기관 서비스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 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경우) 정기 방문 점검 횟수 ▪ 추가 방문 요청 시 현재 서비스 수요 정도 ▪ 서비스 결과 (지도점검결과, 교육, 인증 등)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 ▪ 제공받은 관련 자료의 활용 및 만족도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 위탁서비스 외에 추가 필요 서비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의향

2)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한 항목인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표본배분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표 Ⅲ-15과 같다.

〈표 Ⅲ-15〉 실태조사 설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인식도 조사
조사대상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위탁대행 서비스를 받은 수요사업장
조사방법	유선, 메일 등을 통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섭외 후 각 서비스 대상 기관에 무작위 배포,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1차: 2024년 8월 5일 ~ 8월 23일 (3주) 2차: 2024년 8월 28일 ~ 9월 16일 (3주)
표본배분 방법	분야별, 지역별 비례배분을 통한 민간재해예방 기관 섭외 후 배포

3) 설문조사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응답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며, 2차로 핵심 내용 범주화를 위해 대표 응답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서술형 문항별 응답빈도가 높은 단어, 의미 단위 및 핵심어 등을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항목은 전문가를 활용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

(1) 수요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조사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기관평가실에서 수행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 13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조사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안전관리전문기관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92.5점(표본수 2,999개)으로 나타났고, 2022년은 91.4점(표본수 3,465개), 2023년은 91.0점(표본수 2,733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와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 약 91.6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3년 평균 만족도기준으로 기술지원 요원의 친절성 항목이 약 9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협의 등 사전안내 적절성(약 93.5점), 기술지원 내용의 알기 쉬운 설명(약 92.4점), 사업장에 적합한 자료 제공(약 92.4점)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림 III-12] 안전관리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2년간 보건관리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 조사 결과 정보가 누락되어 2년치 결과만 분석하였다. 2022년은 91.2점(표본수 3,359개), 2023년은 92.7점(표본수 2,475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Ⅲ-13과 같이 2년치의 평균 만족도는 약 92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2년 평균 만족도 기준으로 요원의 친절성이 약 9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협의 등 사전안내 적절성, 준비정도는 약 95점, 정보의 적합한 제공 여부는 약 92.7점 등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보건관리전문기관



[그림 Ⅲ-13] 보건관리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다) 안전보건진단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7.8점(표본수 115개), 2022년은 85.5점(표본수 115개), 2023년은 89.3점(표본수 134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III-14와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87.5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3년 평균 만족도기준으로 일정협의 등 사전안내 적절성이 약 9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원의 친절성이 약 90.3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 만족도는 약 86.4점으로 평가되었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추천의향은 약 84.8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안전보건진단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라) 안전인증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안전인증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90.5점(표본수 215개), 2022년은 89.4점(표본수 279개), 2023년은 86.7점(표본수 222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5와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88.9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은 2023년의 안전인증기관의 설문조사 항목이 바뀌어 3년 치 평균을 보기 어려워 2021년, 2022년의 2년 치의 평균 만족도를 보았다. 검사원의 관련법규 규칙, 절차 등 준수정도가 약 9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검사로 인한 안전성 확보가 약 91.1점, 검사(심사) 기준의 적합성이 약 91점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의 전반적 만족도는 약 88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Ⅲ-15] 안전인증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마) 안전검사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안전검사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8.8점(표본수 215개), 2022년은 88.9점(표본수 373개), 2023년은 88.7점(표본수 302개)으로 나타났으며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88.8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3년 평균 만족도기준으로 요원의 친절성이 약 91.3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안전인증기관의 설문조사항목이 바뀌어 다른 항목에서는 3년 치 평균을 내기 어려워 해당연도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2022년에는 검사원의 공정한 검사 진행이 9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2023년은 요원의 친절도가 각 9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약 89.7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바) 자율안전검사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3.6점(표본수 230개), 2022년은 94.7점(표본수 160개), 2023년은 94.6점(표본수 112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III-16과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91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은 2023년의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설문조사항목이 바뀌어 3년 치 평균을 보기 어려워 2021년, 2022년의 2년 치의 평균 만족도를 보았다. 검사원의 관련법규 규칙, 절차 등 준수정도가 약 9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사대상 설비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 약 94.7점, 검사기관 직원의 친절성 약 94.7점, 검사로 인한 안정성 확보 약 93.4점 등 모든 항목에서 90점이 넘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전반적 만족도도 약 93.8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Ⅲ-16] 자율안전검사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사) 특수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평가주기가 2년에 1회로, 2021년, 2023년 2회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4.3점(표본수 3,750개), 2023년은 89.6점(표본수 3,122개)으로 나타났으며 2회치 평균 만족도는 약 87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설문조사항목이 바뀌어 2회치 평균을 보기 어려워 해당연도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2021년에는 타인개봉 경고문구 삽입 및 직접 전달 정도 항목이 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은 서비스 제공 정도(출장검진)가 9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은 평가 주기가 2년에 1회로, 2021년, 2023년 2회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93.5점(표본수 2,726개), 2023년은 93.7점(표본수 1,335개)으로 나타났으며 2회치 평균 만족도는 약 93.6점으로 만족도가 매우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은 석면조사기관의 설문조사항목이 바뀌어 2회치 평균을 보기 어려워 해당연도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2021년에는 조사자의 친절성 항목이 9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도 조사자의 친절성 항목이 9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직무교육기관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2년간 직무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 조사 결과 정보가 누락되어 2년치 결과만 분석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2.4점(표본수 731개), 2022년은 82.6점(표본수 1,497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Ⅲ-17과 같이 2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82.5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2년 평균 만족도 기준으로 강사성실도 항목이 약 8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 협의 등 강사 지식 정도 약 85.7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무교육기관의 추천의향은 약 80.6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직무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차) 건설업기초교육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0.7점(표본수 2,332개), 2022년은 82.6점(표본수 3,556개), 2023년은 81.7점(표본수 3,525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III-18과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81.7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3년 평균 만족도 기준으로 강사성실도 항목이 약 8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재해 예방 정도 약 86.6점, 안전보건 관련 교육내용 구성 약 85.9점, 강사 지식 정도는 약 85.9점의 점수를 보였다.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추천의향은 약 79.6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그림 III-18]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카)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81.8점(표본수 5,945개), 2022년은 84.8점(표본수 7,957개), 2023년은 82.5점(표본수 5,775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Ⅲ-19와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83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3년 평균 만족도 기준으로 강사성실도 항목이 약 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 지식 정도 약 86.2점, 안전보건 관련 교육내용 구성은 약 84.9점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전반적 만족도는 약 84.5점으로 평가되었고,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추천의향은 약 84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그림 Ⅲ-19]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1년 만족도는 92.6점(표본수 2,438개), 2022년은 92점(표본수 4,779개), 2023년은 88.8점(표본수 6,566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III-20과 같이 3년 치 평균 만족도는 약 91.3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은 2023년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설문조사항목이 바뀌어 3년 치 평균을 보기 어려워 2021년, 2022년의 2년 치의 평균 만족도를 보았다. 점검기술지원 요원의 친절성의 항목이 약 9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지원 내용의 알기 쉬운 설명이 약 93.8점, 사전안내 적절성이 약 93.4점, 제공되는 자료의 이해 정도가 약 92.5점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추천의향은 약 88.2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그림 III-2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평가주기가 2년에 1회로, 2022년 1회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22년 만족도는 91.5점(표본수 5,478개)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조사자의 친절성의 항목이 9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정 협의 사전안내 적절성이 94.4점, 사업장에 적합한 조사 진행 정도 93.9점, 제공되는 자료의 이해 정도가 약 92.5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전반적 만족도는 90.7점으로 평가되었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추천의향은 89.2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민간재해예방 위탁대행 서비스 인식도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일반현황과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 인식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5일에서 8월 23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1차)하였으나 회수율이 낮아, 8월 28일에서 9월 16일까지 3주간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13개의 응답지가 회수되었고 113개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113개의 응답지 중 표 Ⅲ-16과 같이 64개(56.6%)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서비스 기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에서, 20개(17.7%)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 24개(21.2%)는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등의 단발성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 5개(4.4%)는 인증검사 등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에서 응답하였다.

〈표 Ⅲ-16〉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설문 대상

구분	응답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64(56.6%)
교육기관 등	20(17.7%)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등	24(21.2%)
인증검사 등	5(4.4%)
총합	113

가) 사업장 일반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장의 업종을 살펴보면 기타서비스업(54%), 제조업(27.4%), 건설업(16.8%), 운수 및 창고업(0.9%)으로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Ⅲ-17은 본 조사에 응답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대행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의 업종을 나타낸다.

〈표 Ⅲ-17〉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업종

구분	응답
기타서비스업	61(54%)
제조업	31(27.4%)
건설업	19(16.8%)
운수 및 창고업	1(0.9%)
무응답	1(0.9%)
총합	1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표 Ⅲ-18과 같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이 3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울산, 부산, 경남이 23.9%, 전남/광주/제주이 20.3%, 대구/경북이 14.2%, 대전/충남/충북 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지역

구분	응답
서울/경기/인천/강원	34(30.1%)
대전/충남/충북	13(11.5%)
대구/경북	16(14.2%)
울산/부산/경남	27(23.9%)
전남/광주/제주	23(20.3%)
총합	1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파악한 결과 표 III-19와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55.8%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인 이상이 16.8%, 100~199인 11.5%, 50~99인 10.6%로 조사 되었다.

〈표 III-19〉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규모

구분	응답
50인 미만	63(55.8%)
50~99인	12(10.6%)
100~199인	13(11.5%)
200인 이상	19(16.8%)
무응답	6(5.3%)
총합	113

건설업의 경우, 응답 사업장 총 30개소 중 50억 미만 사업장이 전체 건설업 응답자의 83.3%(25개소)로 가장 많았고, 50억~119억 미만은 2개소, 120~799억 미만은 2개소, 800억 이상은 1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Ⅲ-20).

〈표 Ⅲ-20〉 민간재해예방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장 공사 규모(건설업)

구분	응답
50억 미만	25(83.3%)
50억~119억 미만	2(6.7%)
120~799억 미만	2(6.7%)
800억 이상	1(3.3%)
총합	30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책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가 26.5%(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보건관리자가 24.8%(28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23%(26명)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해당직책이 아닌자와 무응답자가 모두 포함되며 응답자 직책은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응답자 직책

구분	응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6(23%)
안전관리자	30(26.5%)
보건관리자	28(24.8%)
기타	29(25.7%)
총합	113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안전담당자인 경우 직위를 살펴보면 표 Ⅲ-22와 같이 응답자 총 74명 중 부장이 18명 응답하여 약 24.3%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표 및 과장이 각 16명으로 21.6%씩 차지하였고, 다음 사원, 대리가 각 7명으로 9.5%씩 차지하였다. 차장이 5명으로 6.8%, 이사 2명으로 2.7%로 조사 되었으며 그 외 계장 2명 실장 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2〉 안전담당자 응답자 직위

구분	응답
사원	7(9.5%)
대리	7(9.5%)
과장	16(21.6%)
차장	5(6.8%)
부장	18(24.3%)
이사 등 임원	2(2.7%)
대표(지사장 포함)	16(21.6%)
기타	3(4%)
총합	74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조사한 결과 표 Ⅲ-23과 같이 10억 미만과 100억 이상이 각각 35명이 응답하여 약 31%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0~50억 미만은 30명으로 약 26.5%로 조사 되었으며, 50~100억 미만은 10명으로 약 8.8%, 무응답은 3명으로 2.7%로 조사 되었다.

〈표 Ⅲ-23〉 사업장 연간 매출액

구분	응답
10억 미만	35(31%)
10~50억 미만	30(26.5%)
50~100억 미만	10(8.8%)
100억 이상	35(31%)
무응답	3(2.7%)
총합	1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업장 안전보건 예산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24와 같이 응답자 113명 중 72명 약 63.7%가 편성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35명(31%)는 편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4〉 사업장 안전보건 예산 편성 여부

구분	응답
편성	72(63.7%)
미편성	35(31%)
무응답	6(5.3%)
총합	1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III-25와 같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가 58명이 응답하여 약 51.3%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가 16명이 응답하여 약 14.2%로 조사 되었고, 그 다음 회사 대표가 단독 처리한다고 15명이 응답하여 약 13.3%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당 부서의 장이 알아서 한다가 10명(8.9%), 공장장 선에서 처리한다가 4명(3.5%)로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관련 업무 규정 및 절차대로 진행한다, 이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등이 있었다.

〈표 III-25〉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 처리 절차

구분	응답
회사 대표가 단독 처리한다.	15(13.3%)
공장장 선에서 처리한다.	4(3.5%)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8(51.3%)
해당부서의 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10(8.9%)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6(14.2%)
기타	5(4.4%)
무응답	5(4.4%)
총합	113

나) 산업재해 예방 위탁·대행 서비스 인식도 실태 설문조사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분야

안전,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지도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연중 상시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지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 64개소 중 22개소(약 34.3%)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보건관리’ 두 개의 서비스를 함께 받고 있는 사업장이 21개소(약 32.8%), ‘안전관리’만 받는 사업장이 14개소(약 21.9%), ‘보건관리’만 받는 사업장이 2개소(약 3.1%), ‘안전관리’, ‘건설재해예방’ 두 개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은 1개소(약 1.6%), ‘안전관리’,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 세 개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은 1개소(약 1.6%)로 조사되었다.

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진단, 석면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단기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24개소 중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세 가지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이 9개소(약 37.5%)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두 가지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이 4개소(약 16.7%), ‘작업환경측정’ 수요 사업장이 3개소(약 12.5%).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보건진단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은 2개소(약 8.3%), ‘안전보건진단’ 서비스만 받은 사업장 2개소(약 8.3%),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은 1개소(약 4.2%), ‘석면조사’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 1개소(약 4.2%)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교육(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 중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수요 사업장이 6개소(약 30%)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수요 사업장이 5개소(약 25%),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등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받은 사업장이 5개소(약 25%),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등

두 가지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이 2개소(약 10%)로 조사되었다.

표 III-26은 응답자가 경험한 위탁 대행 서비스 분야를 나타낸다.

〈표 III-26〉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분야

응답 구분	서비스 종류	응답(개소)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	1(1.6%)
	안전관리, 보건관리	21(32.8%)
	안전관리, 건설재해예방	1(1.6%)
	안전관리	14(21.9%)
	보건관리	2(3.1%)
	건설재해예방지도	22(34.3%)
	무응답	3(4.7%)
	소계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9(37.5%)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4(16.7%)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1(4.2%)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2(8.3%)
	작업환경측정	3(12.5%)
	석면조사	1(4.2%)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자율안전진단)	2(8.3%)
무응답	2(8.3%)	
	소계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6(30%)
	안전보건교육	5(25%)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5(25%)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2(10%)
	무응답	2(10%)
	총합	2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2(40%)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3(60%)
	소계	5
응답자 총합		113

○ 안전보건관리 업무 자문 기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 시 활용하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다회성 서비스 경험 사업장의 경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37명(약 57.8%)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공단’ 25%, ‘고용노동부’ 12.5%, ‘기타’ 6.2%로 조사 되었다.

건강진단 등 단기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응답자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10명(약 41.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용노동부’ 6명(약 25%),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5명(약 20.8%)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자체 안전팀에 자문을 얻음’ 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교육 서비스 수요 사정장의 응답자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10명(약 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6명(약 30%), ‘고용노동부’는 3명(약 15%)로 조사되었다. 인증검사 등 서비스 경험 사업장의 응답자는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4명(약 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7은 안전보건관리 자문 시 주로 활용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III-27〉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자문을 얻는 기관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고용노동부	8(12.5%)
	안전보건공단	16(25%)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37(57.8%)
	기타	2(3.1%)
	무응답	1(1.6%)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고용노동부	6(25%)
	안전보건공단	10(41.7%)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5(20.8%)
	기타	2(8.3%)
	무응답	1(4.2%)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고용노동부	3(15%)
	안전보건공단	10(50%)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6(30%)
	기타	1(5%)
	무응답	20
	총합	24(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고용노동부	0
	안전보건공단	1(20%)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4(80%)
	기타	0
	무응답	0
	총합	5(100%)

○ 업무 위탁 후 사고 및 질병 발생 등의 변화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후 사고 및 질병 발생 등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 경험 사업장의 경우 약 70.3%의 응답자가 ‘감소하고 있다’로 답변하였으며, ‘전과 동일하다’가 18명으로 28.1%로 조사되었다.

건강진단, 측정 등의 업무 위탁 후 사고 및 질병 발생 등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전과 동일하다’가 12명으로 약 50%로 조사되었다.

‘감소하고 있다’로 응답한 인원은 9명으로 약 37.5%였으며, ‘증가하고 있다’로 1명이 응답하였다.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사업장의 경우, ‘감소하고 있다’로 응답한 인원이 11명(약 55%)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 동일하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7명으로 약 35%였으며, ‘증가하고 있다’에 1명이 응답하였다.

인증기관 등의 업무 위탁 사업장의 응답자의 경우, 전과 ‘동일하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3명으로 약 60%였으며, ‘감소하고 있다’로 응답한 인원이 2명(약 40%)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8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업무 위탁 후 사고 및 질병 발생 등의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표 III-28〉 업무 위탁 후 사고 및 질병 발생 등의 변화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감소하고 있다	45(70.3%)
	전과 동일하다	18(28.1%)
	증가하고 있다	0
	무응답	1(1.6%)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감소하고 있다	9(37.5%)
	전과 동일하다	12(50%)
	증가하고 있다	1(4.2%)
	무응답	2(8.3%)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감소하고 있다	11(55%)
	전과 동일하다	7(35%)
	증가하고 있다	1(5%)
	무응답	1(5%)
	총합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감소하고 있다	2(40%)
	전과 동일하다	3(60%)
	증가하고 있다	-
	총합	5(100%)

○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제도의 필요성 인식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제도가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응답자의 경우 61명(약 95.3%)가 ‘필요한 제도이다’로 응답하였으며, 2명(3.1%)만 ‘불필요한 제도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29).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단기 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응답자의 경우, 20명(약 83.4%)의 응답자가 ‘필요한 제도’ 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8.3%)만 ‘불필요한 제도’ 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29).

교육기관 등의 위탁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응답자 20명(100%) 모두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증기관 등의 업무 위탁 사업장의 경우, 응답자 5명(100%) 모두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29).

〈표 Ⅲ-29〉 업무 위탁 제도의 필요성 인식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필요한 제도이다	61(95.3%)
	불필요한 제도이다	2(3.1%)
	무응답	1(1.6%)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필요한 제도이다	20(83.4%)
	불필요한 제도이다	2(8.3%)
	무응답	2(8.3%)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필요한 제도이다	20(100%)
	불필요한 제도이다	-
	총합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필요한 제도이다	5(100%)
	불필요한 제도이다	-
	총합	5(100%)

○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대행 제도가 필요한 이유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필요한 이유로는 안전보건관리 대행 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가 29명(약 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22명(약 36.1%), ‘자격증 소유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다’가 9명(약 14.8%)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0).

측정, 검진 등 단기 서비스 경험 사업장의 응답자의 경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가 12명(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가 8명(약 40%)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0).

교육기관 등의 위탁 업무로 사업장에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8명(약 40%),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8명(약 40%), ‘작업장 내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다’ 3명(약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0).

인증 검사 업무 등 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명(약 40%), ‘작업장 내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 2명(약 40%), ‘생산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1명(약 20%)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0).

〈표 Ⅲ-30〉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대행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22(36.1%)
	인건비가 절감된다. 불필요한 제도이다	-
	자격증 소유자 채용의 어려움 감소	9(14.8%)
	관련 업무를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29(47.5%)
	무응답	1(1.6%)
	총합	61(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8(40%)
	인건비가 절감된다. 불필요한 제도이다	-
	자격증 소유자 채용의 어려움 감소	-
	관련 업무를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12(60%)
	무응답	0(0%)
	총합	20(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작업장 내 안전사고 등 산재 감소	3(15%)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8(40%)
	생산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8(40%)
	무응답	1(5%)
	총합 (무응답 1)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작업장 내 안전사고 등 산재 감소	2(40%)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
	생산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1(20%)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40%)
	무응답	0(0%)
	총합	5(100%)

○ 위탁·대행 서비스 활용 계기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된 계기를 조사 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대행 등 상시서비스를 활용한 기관의 응답자의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위탁’ 하게 된 경우가 27개소(약 42.2%)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뢰’한 경우가 26개소(약 40.6%),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5개소(약 7.3%), ‘제3자의 권유’가 4개소(약 6.3%)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건강진단, 측정 등 업무 위탁 응답자의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위탁’ 하게 된 경우가 27개소(약 42.2%)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한 경우’가 26개소(약 40.6%),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은 5개소(약 7.3%), ‘제3자의 권유’ 4개소(약 6.3%)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안전보건교육 위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한 경우가 11개소(약 55%)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위탁하게 된 경우가 7개소(약 35%),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은 1개소(약 5%)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안전인증 검사 등 업무 위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한 경우’가 3개소(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위탁하게 된 경우가 2개소(약 4%)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표 Ⅲ-31〉 위탁·대행 서비스 활용 계기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	27(42.2%)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뢰	26(40.6%)
	제3자의 권유로 의뢰	4(6.3%)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5(7.3%)
	무응답	2(3.1)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	2(8.3%)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뢰	12(50%)
	제3자의 권유로 의뢰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5(20.9%)
	기타	2(8.3%)
	무응답	3(12.5%)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	7(35%)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뢰	11(55%)
	제3자의 권유로 의뢰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1(5%)
	무응답	1(5%)
	총합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	2(40%)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뢰	3(60%)
	제3자의 권유로 의뢰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
	총합	5(100%)

○ 위탁·대행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인식도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경우, ‘적당한 수준이다’가 31명(약 48.4%)로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 한다’ 27명(약 43.8%), ‘비싼 편이다’ 3명(약 4.7%)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I-32).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92.2%가 저렴하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안전보건 대행 분야의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인식하는 위탁수수료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I-32).

또한 검진, 측정, 진단 등 단기 서비스 활용 응답자의 경우, ‘적당한 수준이다’로 응답한 인원이 13명(약 54.2%)로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6명(약 25%), ‘비싼 편이다’ 3명(약 12.5%)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I-32).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수강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당한 수준이다’로 응답한 인원이 12명(약 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 한다’ 5명(약 25%), ‘비싼 편이다’ 2명(약 10%)로 조사 되었다.

인증기관 등의 위탁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3명(약 60%), ‘적당한 수준이다’ 1명(약 20%)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I-32).

〈표 Ⅲ-32〉 위탁·대행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인식도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28(43.8%)
	비싼편이다	3(4.7%)
	적당한 수준이다	31(48.4%)
	무응답	2(3.1%)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6(25%)
	비싼편이다	3(12.5%)
	적당한 수준이다	13(54.2%)
	무응답	2(8.3%)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5(25%)
	비싼편이다	2(10%)
	적당한 수준이다	12(60%)
	무응답	1(5%)
	총합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3(60%)
	비싼편이다	-
	적당한 수준이다	1(20%)
	무응답	1(20%)
	총합	5(100%)

○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질

안전보건관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관리 등 위탁대행서비스 활용 응답자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으로 응답한 인원이 50명(7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의식’ 10명(15.7%), ‘서비스 의식’ 이 2명(3.1%) 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I-33).

검진, 측정, 진단 등 단기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응답자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으로 응답한 인원이 20명(약 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의식’ 2명(약 8.3%), ‘책임 의식’ 1명(약 4.2%) 순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I-33).

안전보건교육 기관의 경우 강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으로 응답한 인원이 16명(약 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진행의 성실성’ 3명(약 15%), ‘교육 진행 능력’ 1명(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

인증기관 등의 업무 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으로 답하였다 (표 III-33).

또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장 업무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구성’ 이 17명(약 85%),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강의시설(교육장, 휴게실, 주차시설 및 접근성 등)’ 3명(약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

〈표 Ⅲ-33〉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질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50(78.1%)
	서비스 의식	2(3.1%)
	책임 의식	10(15.7%)
	무응답	2(3.1%)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20(83.3%)
	서비스 의식	2(8.3%)
	책임 의식	1(4.2%)
	무응답	1(4.2%)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16(80%)
	교육 진행의 성실성	3(15%)
	교육 진행 능력 (목소리, 발음, 강의스킬 등)	1(5%)
	총합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서비스 의식		-
책임 의식		-
총합		5(100%)

〈표 Ⅲ-34〉 안전보건교육 서비스 기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구분	응답
현장 업무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구성	17(85%)
교육일정 조율 및 관련 업무 상담 시 서비스 의식	-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강의시설 (교육장, 휴게실, 주차시설 및 접근성 등)	3(15%)
체험 중심의 실습용 장비의 마련	-
총합	20

○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

안전보건관리 등 위탁·대행 서비스 담당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는 월 횟수를 조사한 결과 월 2회로 응답한 자가 44명(약 68.7%)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는 13명(약 20.3%), 월 3회 이상 4명(약 6.3%)로 조사되었다 (표 III-35).

〈표 III-35〉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월 1회	13(20.3%)
	월 2회	44(68.7%)
	월 3회 이상	4(6.3%)
	무응답	3(4.7%)
	총합	64(100%)

○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에 대한 의견

안전보건관리 위탁 서비스 정기점검 및 방문 횟수에 대한 사업장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 로 응답한 인원이 49명(약 76.6%)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부족하다' 7명(약 10.9%), '월 3회 이상' 7명(10.9%)으로 현재보다 방문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

〈표 Ⅲ-36〉 안전보건관리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에 대한 의견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적당하다.	49(76.6%)
	부족하다.(더 늘려야 한다.)	7(10.9%)
	월 3회 이상	7(10.9%)
	무응답	1(1.6%)
	총합	64(100%)

○ 정기 점검 및 방문 이외 업무 요청 시 처리 방식

정기점검 및 방문 이외의 업무 요청 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표 Ⅲ-37과 같이 ‘전화로 상담한다’로 응답한 인원이 31명(약 48.4%), ‘즉시 방문 및 상담으로 진행’ 24명(약 37.5%) ‘차기 정기 방문 시 상담’ 8명(약 12.5%) 순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Ⅲ-37).

〈표 Ⅲ-37〉 정기점검 및 방문 이외 업무 요청 시 처리 방식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즉시 방문 및 상담으로 진행	24(37.5%)
	전화로 상담	31(48.4%)
	차기 정기 방문 시 상담	8(12.5%)
	무응답	1(1.6%)
	총합	64(100%)

○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개선 처리 방식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의 처리 방식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로 응답한 인원이 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5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로 응답한 사업장은 약 29.7%(19개소),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로 응답한 사업장은 약 12.5%(8개소),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로 응답한 사업장은 1.6%(1개소)로 나타났다 (표 III-38).

또한 진단, 측정 등 단기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경우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로 응답한 인원이 12명으로 약 50%로 조사되었다.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로 응답한 사업장은 약 29.2%(7개소),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로 응답한 사업장은 약 8.3%(2개소),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로 응답한 사업장은 약 4.2%(1개소)로 나타났다 (표 III-38).

인증기관 등의 업무 위탁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의 처리방식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응답자 5명 모두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 한다’ 로 조사되었다 (표 III-38).

〈표 Ⅲ-38〉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장 처리 방식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32(50%)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8(12.5%)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19(29.7%)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1(1.6%)
	무응답	4(6.2%)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12(50%)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2(8.3%)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7(29.2%)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1(4.2%)
	무응답	2(8.3%)
	총합	24(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5(100%)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
	총합	5

○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안전점검 지도사항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안전점검 지도사항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인원이 62명으로 전체응답자의 약 96.9%로 조사되었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모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39).

진단, 측정 등 단기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인원이 21명으로 약 87.5%로 조사되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태보고서만 제출 받을 뿐 다른 설명은 안하는 편이다’ 의 답변에도 1명(약 4.2%)이 응답하였다 (표 III-39).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안전점검 지도사항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 모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39).

〈표 Ⅲ-39〉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안전점검 지도사항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편이다.	62(96.9%)
	대충 설명하는 것 같다.	-
	점검 결과에 대한 상태보고서만 제출받을 뿐 다른 설명은 안하는 편이다.	-
	무응답	2(3.1%)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편이다.	21(87.5%)
	대충 설명하는 것 같다.	-
	점검 결과에 대한 상태보고서만 제출받을 뿐 다른 설명은 안하는 편이다.	1(4.2%)
	무응답	2(8.3%)
	총합	24(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5(100%)
	대충 설명하는 것 같다.	-
	점검 결과에 대한 상태보고서만 제출받을 뿐 다른 설명은 안하는 편이다.	-
	총합	5(100%)

○ 위탁서비스 담당자 사업장 방문 시 업무 수행 시간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사업장 방문 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 표 Ⅲ-40과 같이 ‘30분~1시간’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34명(약 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2시간’으로 응답한 인원은 23명(35.9%), ‘2시간 이상’ 4명(약 6.3%), ‘30분 미만’ 1명(약 1.6%)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Ⅲ-40).

〈표 Ⅲ-40〉 위탁서비스 담당자 사업장 방문 시 업무 수행 시간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30분 미만	1(1.6%)
	30분~1시간	34(53.1%)
	1시간~2시간	23(35.9%)
	2시간 이상	4(6.3%)
	무응답	2(3.1%)
	총합	64

○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 받은 안전보건 관련 자료 활용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 받은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강의교재로 활용’ 18명(약 28.1%),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게시용 자료로 활용’ 18명(약 28.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활용 홍보자료로 활용’ 15명(약 23.5%), ‘안전보건 관리 관련 업무 결정사항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 11명(약 17.2%)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1).

진단, 측정 등 단기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관련 업무 결정사항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 11명(약 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게시용 자료로 활용’ 5명(약 20.8%), ‘안전보건교육 강의교재로 활용’ 3명(약 12.5%),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활용 홍보자료로 활용’ 3명(약 12.5%)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1).

〈표 Ⅲ-41〉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 받은 안전보건 관련 자료 활용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의교재로 활용	18(28.1%)
	안전보건 관리 업무 결정 시 기준자료로 활용	11(17.2%)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게시용 자료로 활용	18(28.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15(23.5%)
	무응답	2(3.1%)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의교재로 활용	3(12.5%)
	안전보건 관리 업무 결정 시 기준자료로 활용	11(45.8%)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게시용 자료로 활용	5(20.9%)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3(12.5%)
	무응답	2(8.3%)
	총합	24(100%)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추가 필요 서비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위탁서비스 중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이 19명(약 29.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8명(약 28.1%),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17명(약 26.6%),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지도’ 5명(약 7.8%),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3명(약 4.7%)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2).

진단, 측정 등 단기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경우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지도’ 7명(약 29.3%), ‘안전보건교육’ 6명(약 25%),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5명(약 20.9%),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2명(약 8.3%),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2명(약 8.3%)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2).

안전보건교육 위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5명(약 25%), 안전보건교육 4명(약 20%),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4명(약 20%),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3명(약 15%),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은 3명(약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전문적인 역량 전파 및 교육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III-42).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위탁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이 3명(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1명(약 20%), 안전보건교육 1명(약 20%)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2).

〈표 Ⅲ-42〉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추가 필요 서비스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보건 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19(29.7%)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3(4.7%)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17(26.6%)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5(7.8%)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8(28.1%)
	총합 (무응답 2)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6(25%)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2(8.3%)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5(20.9%)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7(29.3%)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2(8.3%)
	총합 (무응답 2)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4(20%)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3(15%)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4(20%)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3(15%)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5(25%)
	총합 (무응답 1)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1(20%)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1(20%)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3(60%)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총합	5(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서비스 지원 의향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서비스 신청의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의 경우 32개소(약 50%)에서 체계구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개소(약 46.9%)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3).

진단, 측정 등 단기서비스 위탁 사업장의 경우 13개소(약 54.2%)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개소(약 37.5%)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3).

안전보건교육 위탁 사업장의 경우 13개소(약 65%)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소(약 30%)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3).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위탁 사업장의 경우 3개소(약 60%)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개소(약 40%)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3).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53.98%의 응답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서비스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1.6%의 응답자는 지원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3).

〈표 Ⅲ-4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서비스 지원 의향

응답 구분	구분	응답
안전, 보건관리, 건설재해예방 등 상시서비스 수요 사업장	지원 의향 있음	32(50%)
	지원 의향 없음	30(46.9%)
	무응답	2(3.1%)
	총합	64(100%)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단기서비스 수요 사업장	지원 의향 있음	13(54.2%)
	지원 의향 없음	9(37.5%)
	무응답	2(8.3%)
	총합	24(100%)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서비스 수요 사업장	지원 의향 있음	13(65%)
	지원 의향 없음	6(30%)
	무응답	1(5%)
	총합	20(100%)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	지원 의향 있음	3(60%)
	지원 의향 없음	2(40%)
	총합	5(100%)

5) 소결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요 사업장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위탁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석면조사기관이 9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81.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율안전검사기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으로 조사되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지도요원과 담당자가 1:1로 대면하며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안전, 보건관리와 건설재해예방지도 등 기술지도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제공 서비스 기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의 경향을 보였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일반현황과 현재 받는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 인식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예산편성 여부 조사 결과, 약 63.7%가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보건 예산편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등 인식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 정보 등 홍보 강화와 인식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위탁업무 뿐 아니라 조언, 정보 전달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는 지금의 역할보다는 정부와 사업장 사이에서 정보 전달,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보건 등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및 질병 발생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9.3%로 조사되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대행 서비스 활동이 국내 산업재해 및 질병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민간재해예방 위탁대행 서비스 업무가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93.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기술지도 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응답자의 87.6%가 적당하거나 저렴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과 민간재해예방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매우 상반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도입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영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실시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긍정적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정부기관의 참여기관 확대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운영실태 및 역량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조사’와 ‘서비스 이용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적정성과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위탁대행서비스의 효과성 및 역량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의 결과로 얻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 중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행 및 실현 가능한 안에 대해서는 AHP분석을 실시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1) AHP 조사 결과

(1) AHP 분석 개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계층과정 분석법) 기법은 1970년대 초 Pennsylvania 대학의 Thomas Saaty 교수가 미국 국무부 무기통제 및 군비 축소국에서 세계적 경제학자, 게임 이론 전문가들과 협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개발한 의사결정 방법론이다.

AHP의 Analytic은 ‘분석하다’ 라는 동사의 형용사인데, AHP는 직관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판단이기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AHP의 핵심은 Hierarchy에 있다. Hierarchy는 피라미드와 같은 계층을 의미하는데,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화하고 구성요소를 계층적으로 보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기능을 직관적이고 서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체계화된 조직도를 예로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행정 조직도의 국장, 과장, 팀장을 AHP에서는 구성요소 (Elements) 또는 노드(Node)라고 한다. 구성요소는 목표(Goal), 평가 기준(Criteria), 대안(Alternatives) 등으로 구분 된다⁴⁾.

분석 과정에서 문제는 크게 최종목표와 상위 기준, 그리고 하위 기준의 레벨로 3단계 계층 구조를 이루며, 각 레벨에 있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상위 레벨에 있는 관계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쌍대 비교한다.

이후, 모든 요소 간 분석 결과를 행렬로 표현하여 고유벡터 값을 산출하고, 각 레벨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값을 바탕으로 종합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 한다⁵⁾.

AHP 기법의 특징으로, 평가 요소 간의 쌍대 비교를 통해 요소별 가중치를 도출하며, 가중치를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최적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효용이론 혹은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해 이해가 쉽고, 전문가의 주·객관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며, 분석 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부합한다는 점이다⁶⁾.

일관성(consistency) 검토는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인 모순을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해야 할 세 개의 요소 A, B, C가 있을 때, 만약 평가자가 $A > B$, $B > C$ 라고 하였으면, $A > C$ 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전이성(transitivity)이라고 한다. 하지만 $C > A$ 라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이적 모순을 측정하여 제거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AHP에서의 일관성 개념이다. AHP 기법에서는 일관성이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일관성을

4) 조임곤(2021), 정부 사업 평가에 AHP 적용, 한국정책연구, 30(2), 87-110.

5) 양정모(2008), 분석적 계층적 의사결정(AHP)을 활용한 연구과제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21(3), 123-145.

6) Vaidya, O. S., & Kumar, S. (2006).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 overview of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69(1), 1-29.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CI)를 무작위 지수(Random Index: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을 계산하여 검정한다. 이 기법을 적용한 행정학 분야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10% 이내의 일관성 한계 범위로 설정하고 이보다 큰 값을 갖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한다⁷⁾.

이러한 AHP 기법의 장점들로 인해서 다차원 의사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7) 송근원(2013).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8(2), 45-67.

(2) AHP 분석적 계층화 과정

본 연구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대행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기관의 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및 서비스 수요사업장 대상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HP 분석 계층 구조를 수립하였다.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상위 기준에 대한 계층 분류를 통해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설문 결과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최근 안전 관리 인식도 향상 이유, 사업 애로사항, 제도적 애로사항, 민간기관 역할의 부족한 부분, 내실화를 위한 민간기관 필요 요구 사항, 정부 내실화 방안, 사업화 방향 등과 같이 분류하여 총 4가지의 상위 기준과 16가지의 하위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Ⅲ-44).

〈표 Ⅲ-44〉 상위 기준 및 하위 기준

상위 기준	하위 기준	기준 설명
민간재해 예방기관 역할 확대	역할 정립	민간기관과 정부(공단),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및 연계성 확대 방안 마련 (예) 현장 안전 점검 - 민간기관, 민간기관 지원 및 평가관리 - 공단
	위탁 대행 서비스 지정 확대	위탁 대행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컨설팅 중심의 사업장 지원 역할 확대 방안 마련
	권한 확대	KOSHA MS 인증심사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민간기관 위탁 확대
	역할 확대	안전보건 제도 마련 등 민간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 기회 마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	법 정비	처벌 강화 및 타법 중복 사항 등 법 정비를 통한 중복 규제 개선 (예) 화관법,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서비스 질 제고	민간기관 지도 점검 횟수 최소기준 상향 조정
	사업장 지원 확대	안전보건 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확대 지원 및 취약 사업장 안전시설 등 지원 확대
	교육 확대	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공교육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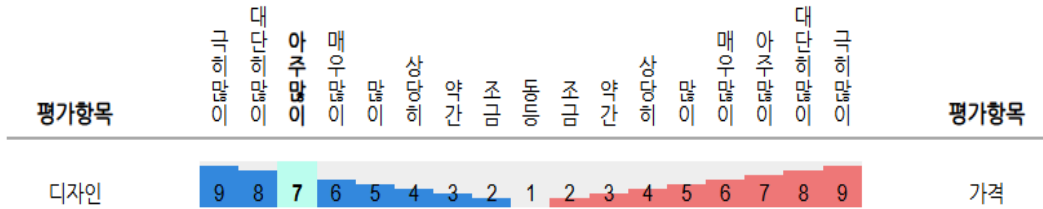
상위 기준	하위 기준	기준 설명
<p>민간재해 예방 시장 문제점 개선</p>	<p>적정수수료 기준</p>	<p>위탁 대행 수수료 현실화</p>
	<p>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p>	<p>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마련,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 마련</p>
	<p>과다 경쟁 방지</p>	<p>민간기관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덤핑 방지 방안(규제) 마련</p>
	<p>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p>	<p>민간기관 간 협업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p>
<p>민간재해 예방기관 관리제도 개선</p>	<p>평가 방향 개선</p>	<p>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개선,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p>
	<p>업무 기준 마련</p>	<p>민간재해예방기관 수행 업무에 대한 단위별 지침 및 세부 사항의 하달을 통한 일괄적 현장 재해예방 기술 지도 방안 마련</p>
	<p>서비스 질 관리</p>	<p>민간재해예방기관 인간 효율화 방안 마련(시장 수급 조절 대책), 과열 경쟁 완화 (예) 시설 및 인력 등 조건 충족 중심의 인가 방식 개선(시장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개선)</p>
	<p>평가 활용 관리 방안 개선</p>	<p>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패널티 확대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p>

AHP 기법에서는 중요도를 9점으로 측정한다. 1부터 9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두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한다. 이 9점 척도는 AHP 쌍대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aaty가 이 9점 척도를 채택한 것은 1956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의 단기정보처리 능력은 7 ± 2 이다'라는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⁸⁾. 각 중요도 점수의 설명은 표 III-45와 같다.

〈표 III-45〉 AHP 쌍대비교 평가 기준

중요도	정의	설명
1	동등	두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함
2	조금	한 요소가 조금 더 중요함
3	약간	한 요소가 약간 더 중요함
4	상당히	한 요소가 상당히 더 중요함
5	많이	한 요소가 많이 더 중요함
6	매우 많이	한 요소가 매우 많이 더 중요함
7	아주 많이	한 요소가 아주 많이 더 중요함
8	대단히 많이	한 요소가 대단히 많이 더 중요함
9	극히 많이	한 요소가 극히 많이 더 중요함

8) 송근원(2013).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8(2), 45-67.



[그림 Ⅲ-21] 쌍대비교 평가 예시

(3) 데이터 수집 과정

본 연구의 AHP 분석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디시전사이언스의 I Make I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로서, AHP 모델 수립과 평가자 배정, 평가, 결과 도출, 저장 및 출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평가자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제외하고 총 15명(내부 연구진 4명, 외부 평가자(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장점으로, 일관성 검증은 평가자가 입력한 쌍대 비교의 일관성을 자동으로 검증하여 일관성 수준을 평가한다. 일관성 비율(CR)이 0.1을 초과할 경우, 소프트웨어는 평가자에게 비일관성 있는 항목을 표시하여 평가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가) 상위 기준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전체 평가자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위탁 대행 서비스 효과성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0.332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확대’가 0.248,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리제도 개선’ 0.219, ‘민간재해예방 시장 문제점 개선’ 0.201으로 나타났다. 표 Ⅲ-46은 상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표 Ⅲ-46〉 상위 기준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순위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확대	0.248	0.01372	2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	0.332		1
민간재해예방 시장 문제점 개선	0.201		4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리제도 개선	0.219		3

나) 하위 기준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전반적인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다음 표 Ⅲ-47과 같다.

〈표 Ⅲ-47〉 하위 기준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확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		
요소별 평가 값		통합결과	요소별 평가 값		통합결과
역할정립	위탁대행 서..	3.8498	법 정비	서비스 질 ..	1.0906
	위탁대행 서.. 권한 확대	1.7473	서비스 질 ..	사업장 지원..	1.1118
	권한 확대	1.292	사업장 지원..	교육 확대	1.236
	역할정립	1.931	법 정비	사업장 지원..	1.2394
	위탁대행 서.. 역할 확대	1.2586	서비스 질 ..	교육 확대	1.2194
결과 중요도			결과 중요도		
역할정립		0.4705	법 정비		0.2602
위탁대행 서비스 지정 ..		0.1295	서비스 질 제고		0.2749
권한 확대		0.2298	사업장 지원 확대		0.2183
역할 확대		0.1702	교육 확대		0.2466
	비일관성 비율	0.00152		비일관성 비율	0.00481
민간재해예방 시장 문제점 개선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리제도 개선		
요소별 평가 값		통합결과	요소별 평가 값		통합결과
적정 수수료..	전문 인력 ..	1.3135	평가방향 개선	업무기준 마련	1.2102
	전문 인력 .. 과다경쟁 방지	2.4956	업무기준 마련	서비스 질 ..	1.1348
	과다경쟁 방지	1.6407	서비스 질 ..	평가 활용 ..	1.007
	적정 수수료..	2.0099	평가방향 개선	서비스 질 ..	1.1438
	전문 인력 .. 기관간 네트워크	1.7548	업무기준 마련	평가 활용 ..	1.1181
결과 중요도			결과 중요도		
적정 수수료 기준		0.2784	평가방향 개선		0.2775
전문 인력 양성 및 교..		0.3648	업무기준 마련		0.2239
과다경쟁 방지		0.1391	서비스 질 관리		0.2484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0.2173	평가 활용 관리 방안 ..		0.2502
	비일관성 비율	0.00096		비일관성 비율	0.00023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확대의 하위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역할 정립'이 0.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한 확대'의 중요도가 0.230, '역할 확대'의 중요도가 0.170, '위탁대행 서비스 지정 확대'가 0.130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할 정립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8).

〈표 III-48〉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

상위 기준	하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순위
민간재해 예방기관 역할 확대	역할 정립	0.471	0.00152	1
	위탁 대행 서비스 지정 확대	0.130		4
	권한 확대	0.230		2
	역할 확대	0.170		3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의 하위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서비스 질 제고’가 0.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 정비’의 중요도가 0.260, ‘교육 확대’의 중요도가 0.247, ‘사업장 지원 확대’가 0.218로 나타났다.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9).

〈표 Ⅲ-49〉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상위 기준	하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순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	법 정비	0.260	0.00481	2
	서비스 질 제고	0.275		1
	사업장 지원 확대	0.218		4
	교육 확대	0.247		3

민간재해예방 시장 문제점 개선의 하위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마련'이 0.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 수수료 기준'의 중요도가 0.278,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도가 0.218, '과다경쟁 방지'가 0.139로 나타났다.

즉, 민간재해예방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마련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0).

〈표 III-50〉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3)

상위 기준	하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순위
민간재해 예방시장 문제점 개선	적정 수수료 기준	0.278	0.00096	2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마련	0.365		1
	과다 경쟁 방지	0.139		4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0.218		3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리제도 개선의 하위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 방향 개선’이 0.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활용 관리 방안 개선’의 중요도가 0.250, ‘서비스 질 관리’의 중요도가 0.248, ‘업무 기준 마련’이 0.224로 나타났다.

즉,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향 개선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1).

〈표 Ⅲ-51〉 하위 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4)

상위 기준	하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순위
민간재해예 방기관 관리제도 개선	평가 방향 개선	0.278	0.00023	1
	업무 기준 마련	0.224		4
	서비스 질 관리	0.248		3
	평가 활용 관리 방안 개선	0.250		2

다) 기준의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앞의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위탁 대행 서비스 효과성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요인 종합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자들은 효과성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 요인에 대해 종합적 중요도를 ‘역할 정립(0.117)’, ‘서비스 질 제고(0.091)’, ‘법 정비(0.086)’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교육 확대(0.082)’와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0.073)’ 또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며,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의 하위 기준들이 높은 우선순위에 속한다.

종합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대행 서비스 효과성과 역량 제고 방안을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을 가장 우선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표 III-52).

〈표 Ⅲ-52〉 기준의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 성 비율	하위 기준	WL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WC*WL 종합 상대적 중요도	우선 순위
민간 재해 예방 기관 역할 확대	0.248	0.014	역할 정립	0.471	0.002	0.117	1
			위탁 대행 서비스 지정 확대	0.129		0.032	15
			권한 확대	0.230		0.057	8
			역할 확대	0.170		0.042	14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중요도 인식 확대	0.332	0.005	법 정비	0.260	0.005	0.086	3
			서비스 질 제고	0.275		0.091	2
			사업장 지원 확대	0.218		0.072	6
			교육 확대	0.247		0.082	4

상위 기준	WC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 성 비율	하위 기준	WL 상대적 중요도	CR 비일관성 비율	WC*WL 종합 상대적 중요도	우선 순위
민간 재해 예방 시장 문제점 개선	0.201	0.014	적정 수수료 기준	0.278	0.001	0.056	9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마련	0.365		0.073	5
			과다 경쟁 방지	0.139		0.028	16
			기관 간 네트 워크 구축	0.218		0.044	13
			평가 방향 개선	0.278		0.061	7
민간 재해 예방 기관 관리 제도 개선	0.219	0.014	서비스 질 관리	0.248	0.000	0.054	11
			평가 활용 관리 방안 개선	0.250		0.055	10
			업무 기준 마련	0.224		0.049	12

IV. 결론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미국, 영국, 독일의 산재예방활동 수행 민간기관을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련 제도 및 역할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그동안 수행되어 온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 및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국외 민간단체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서비스와 안전감사(Safety Audit) 및 위험성평가 등의 자문 및 컨설팅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업안전 관련 컨설팅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 표준 제정 등 전문분야에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들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업안전보건시장이 형성되어 안전보건 민간단체들의 높은 매출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예방활동 위탁 대행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제도화하여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조력자라고 하기보다 법에서 지정한 활동을 기업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위탁 대행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협력자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스스로가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일반 운영 실태 및 사업 수행 애로사항, 역량 제고 및 향상을 위한 필요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산재예방 위탁대행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설계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분야별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현 시점의 국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기여도와 현재 사업의 운영 상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취합하였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포함한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수렴하였으며, 민간기관의 전문성 등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안전보건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위탁대행서비스의 효과성 및 역량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AHP분석을 활용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은 효과적인 산업재해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자기규율예방체계의 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성실 운영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주의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효과와 현장 작동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기관의 설립 인·허가를 위한 기준이 법적 최소 요건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현재의 자유시장 체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란

공공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체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각종 사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에 머무는 등 산업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절한 정부의 민간기관 시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제재 장치의 마련과 우수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안전보건시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사항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관 간 연계성을 확대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 및 운영
- 정부기관에서 시행중인 사고예방차원의 사전적 감독 및 점검 활동의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상 향상 방안 마련
- 민간기관 지도사항 미개선 사업장 행정조치 의뢰 의무화
- 이에 따른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등 도입 (관리시스템 및 평가제도 개편 필요)
- 민간기관 기술성 등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를 통한 퇴출제도 도입 등

2.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도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업종별 위험성 등 특성에 맞는 표준안전관리체계 개발 및 공유 확대

- 법, 분야별 중복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통합 규제 방안 마련
- 안전보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도입(신공법, 신기술 전파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강화
-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마련 강화와 민간기관을 통한 현장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안전보건 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등 노력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규모 중심에서 업종별 위험성 등 반영)

3.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

- 안전보건 지도요원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및 커리큘럼의 마련 및 확대 시행
- 안전보건 지도요원의 활동 기준 상향 조정 및 지도요원의 경력에 따른 등록기준과 현실적 적정 서비스 수수료 기준 마련 및 공표
-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 등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전문인력풀 마련
- 민간기관 평가의 위탁업무 수행의 질 중심 평가기준 마련 검토
- 민간기관 평가 등급에 따른 상벌제도 명확화
- 민간재해예방기관 인허가 기준 개선

우리나라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보완·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 중인 ‘국고대행 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등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재로서의 사업장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현실적 애로사항 등 민간기관과 사업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과약하여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선정 시 지원 요건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한정하고 등록된 모든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내 지원 사업장을 할당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급 안전보건 정보가 많은 사업장에 제공 되도록 관리해야한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는 양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평가 분야의 업무 충실성의 위험성평가와 위험요인 관리 등에 있어 ‘적정 지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 대상이 특정 사고 요인 등에 집중 되어 있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고유형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업무 성과 분야의 사고 재해율 수준 지표의 경우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개소별 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고사망만인을 수준에 대한 평가 확대, 서비스 만족도 지표 고도화 등 민간기관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의 확대 등 실질적 민간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명확한 상벌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현실적 경영 측면에서 최소 경력자를 채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의 현장 작동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저해되는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요원 경력에 따른 등록 기준과 지도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직무교육 및 커리큘럼의 마련과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의 하나의 축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있는 기술지원 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의 위험성 등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기술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23.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202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2017.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 백종배. 민간기관의 사고예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가스학회지. 2011: 15(6). pp.44-50.
- 한국산업안전학회.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 노동부. 2004.
-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모색.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점검·감독 연계 강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안전보건공단. 민간단체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고용노동부. 2013.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산업 육성 전략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3.

안전보건공단. 전자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원. 2023.

송석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2020.

변기동,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활동이 고객만족도 및 재해예방 기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울산대학교, 2022

양기근 외,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3호(2017. 9): 33-54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안전인증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2023, 2022, 2021.

R&R Consulting.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 2022





Abstract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Objectives :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uch as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 agencies), are entrusted with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asks at workplaces or perform roles such as providing guidance, advice, and education. They play a crucial role in being responsible for workplace safety on the front lines of industrial site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e current agency system is raising many problems in many aspect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 among private agency organizations and indifference towar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in workpla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olicy to foster capacity enhancement, such as professionalism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s, is insufficient, an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cannot participate as the main body of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due to limited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activate related markets by enhanc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pabilities, including the professionalism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verall statu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and related systems and market conditions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Method :

- 1)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laws, systems, etc. related to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We investigated domestic and foreign the privat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and investigated related laws, systems, roles, and best practices of organizations by distinguishing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currently in operation. We also derived measures to enhance the capacity of domestic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and revitalize the market through review of prior research such as related policy research reports.

- 2) Survey on the status of domestic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operation statu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the contribution of consignment service businesses to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current operational difficulties, the need for market expansion, requirements, future business plans, etc.

3) In-depth interview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status and difficultie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suggestions for capacity improvement and market activ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people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by sector, government agency officials, and safety managers at service demand business sites.

- Survey of opinions of stakeholders on the contribution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to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nd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onsignment and agency services
- Survey of opinions on difficulties and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 Survey of suggestions for activating th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market, including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 Survey of necessary matters for enhancing capacity, such as expertis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4) Survey on satisfaction of workplaces using domestic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gencies' services

A survey was conducted on workplaces that received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gency services from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gencies to determin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agency services, awareness of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gency services, necessary requirements for improving agency services,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establishing a workplac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5) Expert Advisory Meeting for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Requirements for Improv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Capacity' and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Businesses Using the Service' of the domestic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s in this study,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usted service utilizing the domestic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mproving their capacity.

In addition, among the various opinions from the field obtained through the survey and the actual situation survey through this study, 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priorities for the plans that are feasible and implementable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Conclusion :

- Analyze the status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related systems, and market conditions to use as basic data for policies to enhance capabilities such as securing expertis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 Establish a plan to utilize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to improve the on-site operability of the governmen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related policies.
- Reflect and uti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the field, into policies and promote comfortable, efficient, and safe work activities to preserve a quality workforce. In the long term, this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workforce, reduce accident rates, increase productivity, and reduce prevention costs.

Key words :

The private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rganiza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Safety and Health agency market



부록

1.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사항 설문지
2.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건설재해예방지도 기관)
3.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기관 등)
4.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5.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인증, 검사 기관 등)

부록

6.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사항 설문지
7.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건설재해예방지도 기관)
8.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기관 등)
9.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10.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인증, 검사 기관 등)

1.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사항 설문지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전관리-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2024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과제인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순수 통계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산업안전보건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사업의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책임연구원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 연 락 처 : 061-740-1277
- 이 메 일 : kjaeho@suncheon.ac.kr


◎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기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에 해당됨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 조사명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주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 조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연구책임)
- 조사대상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사업장
- 조사기간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8월 23일 금요일 (3주간)
- 응답사례 :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
- 사례안내 : 조사종료 후 (9월 중 순차 지급 예정) 휴대전화로 개별 발송

jaeho.kim82@gmail.com [계정 전환](#)

 비공개

 초안 저장됨

* 표시는 필수 질문임

1. 기관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2. 수행 중인 사업 (해당 부문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안전관리 대행
- 보건관리 대행
- 건설재해예방 대행
- 건강진단 대행
- 특수건강신단 대행
- 위험기계기구 인증검사 대행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대행
- 석면조사 대행
- 안전보건진단 대행(명령진단 및 자율진단)
- 안전보건교육 대행(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직무교육 대행(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대행
- 작업환경 측정 대행
- 기타: _____

3-1. 근로자 수 (기업 상황에 맞도록 선택 작성 가능)

안전 보건분야 전문직 (명)

내 답변 _____

3-2. 근로자 수

일반행정직 (명)

내 답변 _____

3-3. 근로자 수

기타 (명)

내 답변 _____

4.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 수

(개소)

내 답변 _____

5. (안전 보건교육 기관의 경우) 연 교육수강생 수

(명)

내 답변 _____

6. 연 매출액

(백만원)

내 답변 _____

7. 최초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 기간
연, 개월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7년 6개월

내 답변

8.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대표 (지사장 포함)

이사 등 임원

부장

차장

과장

기타: _____

9. 귀하의 현 기관 근무기간 *

연, 개월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7년 6개월

o _____

다음

1/3페이지

양식 지우기

아래의 설문을 읽고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는 우리나라 민간재해예방기관 분야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귀기관이 해당하는 분야나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 (고용부 지정기관)들은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안전관리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보건관리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건강진단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특수건강진단 대행(야간 포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위험기계기구 인승·검사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석면조사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안전보건진단 대행 (명령진단 및 자율진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안전보건교육 대행(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특별 교육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직무교육 대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작업환경 측정 대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높음 혹은 매우 높음 선택 시) 1번 문항에서 작성하신 분야에 대하여 높음 또는 매우높음 으로 응답한 이유를 다음 보기의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대행

1.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 효과가 높다
2.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성이 양호하다
3.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제도로 지정기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다
4. 합리적인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기준 규정으로 사업 효과성이 보증되어 있다
5. 법규에 명시된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6.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정된 역할 이외에 부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7.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이 우수하다
8.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심도가 높아 사업장 내에서 많은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9.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관심도가 높아 많은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1. 1-1 문항에서 답변한 보기의 우선순위 사항 이외에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활동에 기여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기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

1-2. (낮음 혹은 매우 낮음 선택 시) 1번 문항에서 작성하신 분야에 대하여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이유를 다음 보기의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대행

1.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2. 정부의 국고지원이 부족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어렵다.
3.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어렵다.
4.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업장과의 갑·을 관계로 정감적인 사업활동이 어렵다.
5.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이 부족하다.
6.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심도가 낮아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7.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관심도가 낮아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6	7
1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1. 1-2 문항에서 답변한 보기의 우선순위 사항 이외에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

2.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고용부 지정기관)”**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민간 교육·컨설팅 기관에 비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안전관리 대행 기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보기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로 작성해 주십시오. (보기의 항목을 참고하여 1위부터 3위까지 선택)
보기

1.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2.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3.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유사 분야의 통합 (예: 보건관리 분야의 경우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진단, 보건교육 등을 통합)
4. 사업장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행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참여 확대 (안전 점검, 제안한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등)
5. 검사 기관과 유지보수 기관의 독립성 확보 (위험기계기구검사, 자율안전검사 기관만 해당됨)
6. 정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강화를 통한 차등 관리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7.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사업 확대 유도
8. 지정 제도 폐지를 통한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자율 경쟁 유도
9. 정부 감독관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 능력 강화
10.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 수수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수수료 지정분야)
11. 부당한 무로서비스 근절을 위한 수수료 확보 방안 마련 (수수료 미지정 분야)

응답

	1	2	3	4	5	6	7	8	9	10
1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1. 3번 문항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로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

4. 귀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안전보건 관리대행,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진단, 건강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사업장에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 안전분야 통합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 (자율), 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 검사, 건설지도 등)
- 보건분야통합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특별건강검진 포함), 보건진단, 보건교육 등)

	1	2	3	4	5	
매우그렇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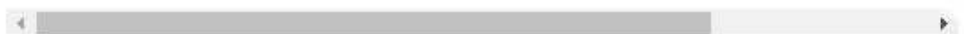
4.1. 4번 문항에서 "그렇다(2)" 또는 "매우 그렇다(1)"라고 생각하신 경우, **효과적인 통합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야**들을 보기에서 골라 표시하여 주십시오 (4번 문항 예시 참조)

보기

1. 안전관리
2. 보건관리
3. 건설재해예방
4. 건강진단
5. 특수건강진단
6. 위험기계기구 인증·검사
7.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8. 석면조사
9. 안전보건진단 (명령진단 및 자율진단)
10.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11.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1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13. 작업환경 측정

	1) 안전 관리	2) 보건 관리	3) 건설 재해예 방	4) 건강 진단	5) 특수 건강진 단	6) 위험 기계기 구 인증· 검사	7) 위험 기계기 구 자율 안전검 사	8) 석면 조사	9) 안전 보건진 단 (명령 진단 및 자율진 단)	10) 전 보 교 육 로 지 관 리 도 주 기 교 육 및 특 교 육
--	-------------	-------------	-------------------	-------------	-------------------	-----------------------------	----------------------------------	-------------	--	---

1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현재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련 업무 중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 또는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가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5-1. 어떤 업무를 위탁 또는 이양해야 할까요?

내 답변

5-2. 위탁 또는 이양 대상의 민간재해예방기관 분야는 무엇이 있나요?

예) 안전관리대행기관

내 답변

5-3. 위탁 또는 이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작성 바랍니다.

내 답변

6. 귀 기관에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떠한 부분인지 작성바랍니다.

내 답변

7. 앞서 응답해 주신 “향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활동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분야의 경우, 해당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분야를 작성해 주십시오)

내 답변

뒤로

다음

2/3페이지

양식 지우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응답사례 제공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지 제출 후 응답사례 지급 및 응답 설문지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답사례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응답자 휴대폰번호 :

내 답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로

제출

3/3페이지

양식 지우기

2.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건설재해예방지도 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기관 관련자용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2023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과제인 “민간재해예방 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사업장에 대한 위탁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등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위탁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순수 통계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산업안전보건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사업의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책임연구원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 연 락 처 : 061-740-1277
- 이 메 일 : kjaeho@sunchon.ac.kr

- ◎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기관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에 해당됨
-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 조사명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주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 조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연구책임)
- 조사대상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사업장
- 조사기간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8월 23일 금요일 (3주간)
- 응답사례 :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
- 사례안내 : 조사종료 후(9월 중 순차 지급 예정) 휴대전화로 개별 발송

I. 설문응답 사업장 일반현황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임업, 광업 및 어업 등 ⑦ 숙박 및 음식점업
- ② 제조업 ⑧ 정보통신업
- ③ 건설업 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수질, 운반, 원료 재생업
- ④ 운수 및 창고업 ⑩ 기타서비스업
- ⑤ 도매 및 소매업 ⑪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⑥ 금융 및 보험업

2. 귀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업장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3. (건설업 외) 귀사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고르시오.

※ 건설업의 경우 3-1 응답

- ① 50인 미만 ③ 100~199인
- ② 50~99인 ④ 200인 이상

3-1 (건설업) 귀사의 공사규모를 고르시오.

- ① 50억 미만 ③ 120억~799억 미만
- ② 50억~119억 미만 ④ 800억 이상

4.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안전관리자
- ③ 보건관리자

4-1 (안전담당자의 경우)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사원 ④ 공장장
- ② 과장 ⑤ 대표
- ③ 부장 ⑥ 기타 (직접기재)

5. 귀사의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고르시오.

- ① 10억 미만 ③ 50~100억 미만
- ② 10~5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6. 사업장 안전예산 편성여부

- ① 편성
- ② 미편성

7.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① 회사 대표가 단독 처리한다. ④ 해당부서의 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 ② 공장장 선에서 처리한다. ⑤ 위탁요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근로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⑥ 기타 (직접기재)

II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1. 귀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안전관리
- ② 건설재해예방
- ③ 보건관리

2.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고용노동부 직접 질의
-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③ 민간재해예방기관
- ④ 기타

3.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후 안전사고 발생의 변화가 있었나요?

- ① 감소하고 있다.
- ② 전과 동일하다.
- ③ 증가하고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4.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한 제도이다. (4-1 질문으로)
- ② 불필요한 제도이다. (4-2 질문으로)
- ③ 잘 모르겠다.

4-1 (4번 ① 응답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 ② 인건비가 절감된다.
- ③ 자격증 소유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4-2 (4번 ② 응답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 ② 사내 자율안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 ③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고 생각한다.
- ④ 잘 모르겠다.

5. 안전보건관리 위탁업무를 위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 ②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
- ③ 제3자의 권유
- ④ 잘 모르겠다.

6. 안전보건관리 위탁업무를 위탁하게 된 이후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작업장 내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
- ②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 ③ 생산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 ④ 잘 모르겠다.

7.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 ①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 ② 서비스 의식
- ③ 책임의식
- ④ 기타 (직접 작성)

8.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월 방문 횟수는?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이상
- ④ 잘 모르겠다.

9. 현재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정기 점검 및 방문 횟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① 적당하다.
- ②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10. 현재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의견은?

- ①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② 비싼편이다.
- ③ 적당한 수준이다.
- ④ 잘 모르겠다.

11. 정기방문 이외에 귀사의 방문 요청 시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① 즉시 방문 및 상담으로 진행
- ② 전화로 상담
- ③ 차기 정기 방문 시 상담
- ④ 잘 모르겠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응답사례 제공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지 제출 후 응답사례 지급 및 응답 설문지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답사례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응답자 휴대폰번호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관련 문의 사항은 연구책임자(순천제일대학교 김재호 교수: 061-740-1277)에게 문의 바랍니다.

3.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기관 관련자용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2023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과제인 “민간재해예방 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사업장에 대한 위탁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등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위탁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순수 통계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산업안전보건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사업의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책임연구원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 연 락 처 : 061-740-1277
- 이 메 일 : kjaeho@sunchon.ac.kr

- ◎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기관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에 해당됨
-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 조사명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주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 조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연구책임)
- 조사대상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사업장
- 조사기간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8월 23일 금요일 (3주간)
- 응답사례 :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
- 사례안내 : 조사종료 후(9월 중 순차 지급 예정) 휴대전화로 개별 발송

I. 설문응답 사업장 일반현황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임업, 광업 및 어업 등 ⑦ 숙박 및 음식점업
- ② 제조업 ⑧ 정보통신업
- ③ 건설업 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원료 재생업
- ④ 운수 및 창고업 ⑩ 기타서비스업
- ⑤ 도매 및 소매업 ⑪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⑥ 금융 및 보험업

2. 귀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업장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3. (건설업 외) 귀사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고르시오.

※ 건설업의 경우 3-1 응답

- ① 50인 미만 ③ 100~199인
- ② 50~99인 ④ 200인 이상

3-1 (건설업) 귀사의 공사규모를 고르시오.

- ① 50억 미만 ③ 120억~799억 미만
- ② 50억~119억 미만 ④ 800억 이상

4.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안전관리자
- ③ 보건관리자

4-1 (안전담당자의 경우)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사원 ④ 공장장
- ② 과장 ⑤ 대표
- ③ 부장 ⑥ 기타 (직접기재)

5. 귀사의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고르시오.

- ① 10억 미만 ③ 50~100억 미만
- ② 10~5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6. 사업장 안전예산 편성여부

- ① 편성
- ② 미편성

7.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① 회사 대표가 단독 처리한다. ④ 해당부서의 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 ② 공장장 선에서 처리한다. ⑤ 위탁요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근로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⑥ 기타 (직접기재)

II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1. 귀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건강진단
- ② 특수건강진단
- ③ 작업환경 측정
- ④ 석면조사
- ⑤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자율안전진단)

2. 평상시 안전보건(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고용노동부 직접 질의
-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③ 민간재해예방기관
- ④ 기타

3.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의 위탁 후 안전사고 및 건강이상자 발생 등의 변화가 있었나요?

- ① 감소하고 있다.
- ② 전과 동일하다.
- ③ 증가하고 있다.

4.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한 제도이다. (4-1 질문으로)
- ② 불필요한 제도이다. (4-2 질문으로)

4-1 (4번 ① 응답자) 안전보건업무 위탁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 ② 인건비가 절감된다.
- ③ 자격증 소유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4-2 (4번 ② 응답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 ② 사내 자율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 ③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고 생각한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 ②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
- ③ 제3자의 권유
- ④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

6.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된 이후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작업장 내 안전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
- ②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 ③ 생산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7. 현재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의견은?

- ①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② 비싼편이다.
- ③ 적당한 수준이다.

8.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 ①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 ② 서비스 의식
- ③ 책임의식
- ④ 기타 (직접 작성)

9.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귀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①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 ②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 ③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 ④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10.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사항에 대한 의견은?

- 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 ② 대충 설명하는 것 같다.
- ③ 점검 결과에 대한 상태보고서만 제출받을 뿐 다른 설명은 안하는 편이다.

11. 현재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① 안전보건교육 강의교재로 활용
- ② 안전보건 관련 업무 결정사항 등의 기 준자료로 활용
- ③ 기사판에 게시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캠페인 자료로 활용

12. 귀사에서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 ②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 ③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 ④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⑥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사내 홍보 활동 등

13.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지원 의향 있음
- ② 지원 의향 없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공단 및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컨설팅하고 있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응답사례 제공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지 제출 후 응답사례 지급 및 응답 설문지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답사례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응답자 휴대폰번호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관련 문의 사항은 연구책임자(순천제일대학교 김재호 교수: 061-740-1277)에게 문의 바랍니다.

4.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기관 관련자용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2023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과제인 “민간재해예방 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사업장에 대한 위탁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등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위탁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순수 통계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산업안전보건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사업의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책임연구원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 연 락 처 : 061-740-1277
- 이 메 일 : kjaeho@suncheon.ac.kr

- ◎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기관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에 해당됨
-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 조사명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주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 조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연구책임)
- 조사대상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사업장
- 조사기간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8월 23일 금요일 (3주간)
- 응답사례 :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
- 사례안내 : 조사종료 후(9월 중 순차 지급 예정) 휴대전화로 개별 발송

I. 설문응답 사업장 일반현황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임업, 광업 및 어업 등 ⑦ 숙박 및 음식점업
- ② 제조업 ⑧ 정보통신업
- ③ 건설업 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수질, 운반, 원료 재생업
- ④ 운수 및 창고업 ⑩ 기타서비스업
- ⑤ 도매 및 소매업 ⑪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⑥ 금융 및 보험업

2. 귀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업장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3. (건설업 외) 귀사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고르시오.

※ 건설업의 경우 3-1 응답

- ① 50인 미만 ③ 100~199인
- ② 50~99인 ④ 200인 이상

3-1 (건설업) 귀사의 공사규모를 고르시오.

- ① 50억 미만 ③ 120억~799억 미만
- ② 50억~119억 미만 ④ 800억 이상

4.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안전관리자
- ③ 보건관리자

4-1 (안전담당자의 경우)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사원 ④ 공장장
- ② 과장 ⑤ 대표
- ③ 부장 ⑥ 기타 (직접기재)

5. 귀사의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고르시오.

- ① 10억 미만 ③ 50~100억 미만
- ② 10~5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6. 사업장 안전예산 편성여부

- ① 편성
- ② 미편성

7.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① 회사 대표가 단독 처리한다. ④ 해당부서의 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 ② 공장장 선에서 처리한다. ⑤ 위탁요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근로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⑥ 기타 (직접기재)

II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1. 귀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②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 ③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2. 평상시 안전보건교육(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고용노동부 직접 질의
 -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③ 민간재해예방기관
 - ④ 기타
3.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교육업무의 위탁 후 산업재해 발생 등의 변화가 있었나요?
 - ① 감소하고 있다.
 - ② 전과 동일하다.
 - ③ 증가하고 있다.
4.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교육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한 제도이다. (4-1 질문으로)
 - ② 불필요한 제도이다. (4-2 질문으로)
 - 4-1 (4번 ① 응답자) 안전보건업무 위탁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 ② 인건비가 절감된다.
 - ③ 자격증 소유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4-2 (4번 ② 응답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 ② 사내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③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고 생각한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해당기관에 교육업무를 위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 ②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
 - ③ 제3자의 권유
 - ④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
6.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된 이후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작업장 내 안전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
 - ②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 ③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④ 기타 (직접 작성)
7. 현재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지급하는 수강료에 대한 의견은?
 - ①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② 비싼편이다.
 - ③ 적당한 수준이다.
 - ④ 잘 모르겠다.
8. 안전보건교육 위탁서비스에 있어 교육기관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 ① 현장 업무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구성
 - ② 교육일정 조율 및 관련 업무 상담 시 서비스 의식
 - ③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강의시설(교육장, 휴게실, 주차시설 및 접근성 등)
 - ④ 체험중심의 실습용 장비의 마련
9. 교육기관 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 ①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 ② 교육 진행의 성실성
 - ③ 교육 진행 능력 (목소리, 발음, 강의스킬 등)
 - ④ 기타 (직접 작성)
10. 귀사에서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 ②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 ③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 ④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⑥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사내 홍보 활동 등
11.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지원 의향 있음
 - ② 지원 의향 없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며,공단 및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컨설팅하고 있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자리데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응답사례 제공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지 제출 후 응답사례 지급 및 응답 설문지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답사례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응답자 휴대폰번호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관련 문의 사항은 연구책임자(순천제일대학교 김재호 교수: 061-740-1277)에게 문의 바랍니다.

5. 위탁대행서비스 수요 사업장 대상 설문지 (안전인증, 검사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기관 관련자용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2023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과제인 “민간재해예방 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사업장에 대한 위탁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등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위탁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순수 통계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산업안전보건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사업의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책임연구원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 연 락 처 : 061-740-1277
- 이 메 일 : kjaeho@sunchon.ac.kr

- ◎ **민간재해예방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등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지도·조언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기관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인증·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간재해예방기관에 해당됨
-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

- 조사명 :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주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 조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김재호 교수 (연구책임)
- 조사대상 :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 이용 사업장
- 조사기간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8월 23일 금요일 (3주간)
- 응답사액 :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
- 사례안내 : 조사종료 후(9월 중 순차 지급 예정) 휴대전화로 개별 발송

I. 설문응답 사업장 일반현황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임업, 광업 및 어업 등 ⑦ 숙박 및 음식점업
- ② 제조업 ⑧ 정보통신업
- ③ 건설업 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수질, 운반, 원료 재생업
- ④ 운수 및 창고업 ⑩ 기타서비스업
- ⑤ 도매 및 소매업 ⑪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⑥ 금융 및 보험업

2. 귀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업장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3. (건설업 외) 귀사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고르시오.

※ 건설업의 경우 3-1 응답

- ① 50인 미만 ③ 100~199인
- ② 50~99인 ④ 200인 이상

3-1 (건설업) 귀사의 공사규모를 고르시오.

- ① 50억 미만 ③ 120억~799억 미만
- ② 50억~119억 미만 ④ 800억 이상

4.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안전관리자
- ③ 보건관리자

4-1 (안전담당자의 경우) 응답자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사원 ④ 공장장
- ② 과장 ⑤ 대표
- ③ 부장 ⑥ 기타 (직접기재)

5. 귀사의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고르시오.

- ① 10억 미만 ③ 50~100억 미만
- ② 10~50억 미만 ④ 100억 이상

6. 사업장 안전예산 편성여부

- ① 편성
- ② 미편성

7. 안전보건관리 관련 이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① 회사 대표가 단독 처리한다. ④ 해당부서의 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 ② 공장장 선에서 처리한다. ⑤ 위탁요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근로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⑥ 기타 (직접기재)

II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위탁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1. 귀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위탁 서비스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건강진단
- ② 특수건강진단
- ③ 작업환경 측정
- ④ 석면조사
- ⑤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자율안전진단)

2. 평상시 안전보건(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고용노동부 직접 질의
-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③ 민간재해예방기관
- ④ 기타

3.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의 위탁 후 안전사고 및 건강이상자 발생 등의 변화가 있었나요?

- ① 감소하고 있다.
- ② 전과 동일하다.
- ③ 증가하고 있다.

4.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한 제도이다. (4-1 질문으로)
- ② 불필요한 제도이다. (4-2 질문으로)

4-1 (4번 ① 응답자) 안전보건업무 위탁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다.
- ② 인건비가 절감된다.
- ③ 자격증 소유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4-2 (4번 ② 응답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라면 그 이유를 고르시오.

- ①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 ② 사내 자율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 ③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고 생각한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내 및 영업을 통해
- ② 회사 자체적으로 의뢰
- ③ 제3자의 권유
- ④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검색

6. (1번에서 응답한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된 이후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작업장 내 안전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
- ②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 ③ 생산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 ④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7. 현재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의견은?

- ①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② 비싼편이다.
- ③ 적당한 수준이다.

8.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 ① 업종 특성에 따른 현장 실무 전문 지식
- ② 서비스 의식
- ③ 책임의식
- ④ 기타 (직접 작성)

9.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귀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① 전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 ②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
- ③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류되고 있다.
- ④ 대부분 개선하지 않는다.

10.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담당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사항에 대한 의견은?

- 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편이다.
- ② 대충 설명하는 것 같다.
- ③ 점검 결과에 대한 상태보고서만 제출받을 뿐 다른 설명은 안하는 편이다.

11. 현재 위탁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① 안전보건교육 강의교재로 활용
- ② 안전보건 관련 업무 결정사항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
- ③ 게시판에 게시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캠페인 자료로 활용

12. 귀사에서 산업재해예방 위탁서비스 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 ② 산재보상업무 등 노무관리 상담
- ③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 ④ 생산설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기술 등
-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⑥ 안전보건교육식 함양을 위한 사내 홍보 활동 등

13.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지원 의향 있음
- ② 지원 의향 없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공단 및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컨설팅하고 있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응답사례 제공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지 제출 후 응답사례 지급 및 응답 설문지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답사례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응답자 휴대폰번호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관련 문의 사항은 연구책임자(순천제일대학교 김재호 교수: 061-740-1277)에게 문의 바랍니다.



연구진

연구기관 :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재호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연구원 : 김화일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연구원 : 김경순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연구원 : 이나은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연구원 : 장성은 (석사과정, 부산가톨릭대학교)

연구보조원 : 강대민 (학사과정, 순천제일대학교)

연구상대역 : 정호석 (차장, 산업안전연구실)

연구기간

2024. 04. 29. ~ 2024.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4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실태 분석
(2024-산업안전보건연구원-626)

발 행 일 : 2024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승현
연 구 책 임 자 :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재호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44
팩 스 : 052-703-0334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4453-16-1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